

잠자는 기록물에

숨겨
를 달자

■ ■ 기록물 공개재분류 실용매뉴얼 : 기록관 편 ■ ■

목 차 | Contents

PART

I

공개재분류 이해하기 6

1. 기록물 공개제도란? 6
2. 기록물 공개재분류란? 7
3. 공개재분류는 언제 하는가? 7
4. 공개재분류는 왜 하는가? 8
5. 이 책의 적용범위 및 대상 9
6. 공개관리 업무처리절차 근거 9
7. 용어의 정의 10

PART

II

공개재분류 따라하기 14

-  기록물 공개재분류 표준운영절차 14
 1. 업무추진 관련근거 14
 2. 업무 개요 15
 3. 5년 주기 공개재분류 프로세스 18
 4. 재분류시 주의사항 42
 5. Q&A 42

목 차 | Contents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4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	47
	비공개 기록물 유형별 공개재분류 기준	64
	1. 공통업무	64
	2. 고유업무	72

PART

III

공개재분류 점검하기 144

	업무단계별 체크리스트	144
---	-------------	-----

PART

부록

참고자료 148

	관련 법령 및 훈령	148
	1. 공개재분류 관련 기록물관리법령(2단비교)	148
	2. 국가기록원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규정	152

PART



I

공개재분류 이해하기

1. 기록물 공개제도란?
2. 기록물 공개재분류란?
3. 공개재분류는 언제 하는가?
4. 공개재분류는 왜 하는가?
5. 이 책의 적용범위 및 대상
6. 공개관리 업무처리절차 근거
7. 용어의 정의

I. 공개재분류 이해하기

1. 기록물 공개제도란?

기록물 공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개는 정보나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국정운영에 대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기능도 가진다. 또한, 기록물 공개를 통해 신분재산보호, 권익보호 등 국민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학술연구, 교육자료 등 학술·문화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에 의한 소극적인 공개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중요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물 공개제도의 기본원칙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한 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개와 비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있을 때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한 부분은 모두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기록인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를 최소화하여 공개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공개하여야 한다.

2. 기록물 공개재분류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이라 함)에 의하면 기록물 공개재분류란 기록물 생산 또는 접수 당시 구분하여 등록정보로 관리하고 있던 공개여부를 기록물 정리·이관시 혹은 비공개기록물의 경우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당초의 분류 값을 다른 값으로 바꾸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이라 함)에서도 비공개대상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공개재분류의 용어 그 자체는 공개여부를 다시 분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초 공개로 되어 있던 것을 비공개하거나 비공개로 되어 있던 것을 공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일단 공개된 것은 이미 알려진 것이므로 비공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공개재분류는 대부분 비공개로 구분된 기록물을 공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3. 공개재분류는 언제 하는가?

기록물관리법령에 의하면 기록물 공개재분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실시될 수 있다.

우선 처리과에서는 기록물 정리기간 중 전년도에 생산 완결된 기록물의 공개여부 등에 대한 재분류를 하여야 한다.(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4조)

다음으로 처리과에서 기록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는 시점에서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기록물관리법 제35조제1항)

기록관에서는 보유 비공개기록물에 대하여 비공개로 재분류된 연도로부터 매5년마다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기록물관리법 제35조제2항)

기록관에서는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시점에서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기록물관리법 제35조제1항)

비공개 기록물은 생산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보유 비공개 기록물에 대하여 생산 종료 후 30년 도래시점에서 공개여부를 재분류하게 된다.(기록물관리법 제35조제3항)

이밖에도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경우 공개여부 결정에 따라 공개여부가 재분류 될 수 있다.

4. 공개재분류는 왜 하는가?

공공기관이 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할 때에는 기록물이 생산될 때와는 달리 준현용 단계에 들어서서 생산 당시 비공개 사유로 했던 기록 정보의 민감성이 소멸되거나 공개·비공개함으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업무방해나 이익 침해 사유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구분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록정보의 민감성이나 이익 침해 등의 소멸 여부를 주기적으로 신속하게 검토하여 기록물을 공개하고 자원화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물관리기관에서는 비공개 기록물에 대하여 5년마다 기록물을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구분하도록 한 것이다.

5. 이 책의 적용범위 및 대상

본 매뉴얼은 기록관 기록물 공개재분류 업무의 실용적 활용을 목적으로 발행되었으며, 기록관에서 수행해야 하는 5년 주기 공개재분류 업무절차와 비공개 기록물의 유형별 공개재분류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수록하였다. 다만, 이는 국가기록원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절차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세부적인 업무처리절차,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기록물공개재분류를 위한 심의회 등(이하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라 함)의 구성·운영 등은 각급 기록물관리기관의 상황에 맞도록 조정될 수 있다.

특히, 비공개 기록물 유형별 공개재분류 기준은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한 공개기준으로 기관에서 활용시 개별 기록물의 철·건 내용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될 수 있다.

6. 공개관리 업무처리절차 근거

- 공공기록물관리예관법(전부개정 '06.10.4 법률 제8025호)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일부개정 '06.10.4 법률 제8026호)
- 기타 개별법령에 제시된 공개관련 규정

7. 용어의 정의

● 공개

- ❖ 공공기관이 기록물관리법 및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나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기록을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 비공개

-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 부분공개

- ❖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공개 대상 정보와 비공개 대상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정보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 분류

- ❖ 기록물관리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록물을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 재분류

- ❖ 기록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다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한 번 공개된 기록은 이미 비공개 사유를 상실한 것을 뜻하므로, 재분류는 비공개 기록물을 공개나 부분공개 등으로 다시 분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 기록물관리기관

- ❖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으로 구분한다.(기록물관리법 제3조 제4호)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 ❖ 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으로 구분한다.(기록물관리법 제3조 제5호)

● 기록관

- ❖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에 설치·운영하는 기록물관리기관을 말한다.(기록물관리법 제13조)

● 특수기록관

- ❖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소관 기록물을 장기간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기록물관리기관을 말한다.(기록물관리법 제14조)

PART

II

공개재분류 따라하기

기록물 공개재분류 표준운영절차

1. 업무추진 관련근거
2. 업무 개요
3. 5년 주기 공개재분류 프로세스
4. 재분류시 주의사항
5. Q&A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

비공개 기록물 유형별 공개재분류 기준

1. 공통업무
2. 고유업무

Ⅱ. 공개재분류 따라하기

기록물 공개재분류 표준운영절차

1. 업무추진 관련근거

기록물관리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비공개 기록물에 대하여는 재분류된 연도부터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공공기록물관리예관한법률

제35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①공공기관은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②기록물관리기관은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재분류된 연도부터 매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③비공개 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모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관시기가 30년 이상으로 연장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5조(비공개 기록물의 재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기록물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중 비공개로 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2009년 6월 30일까지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2. 업무 개요

::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 공공기관은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분류하여 관리,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시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 이관하여야 하며, 기록물관리기관은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매 5년마다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내에서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한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비공개 기록물을 재분류하여야 한다.

::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 구성 운영

- 기록관은 비공개 기록물의 재분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는 독립적으로 설치, 운영될 수도 있지만, 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가 공개재분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기록물관리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공개심의회 구성 요건을 참고하면 아래와 같다.

항 목	심 의 회 요 건
구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1인을 포함 7인으로 구성 • 위원 중 4인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3인은 공무원으로 임명
위원장의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

항 목	심 의 회 요 건
위원의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공무원 및 기록물의 공개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경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지급 가능

※ 기록관에서 기록물 공개재분류를 심의하기 위한 가칭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의 구성·운영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님

:: 기록물 공개재분류 시점

● 기록물 이관시점

❖ 기록물관리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처리과는 기록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 당해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 기록관은 기록물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 비공개 기록물에 대한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 사안이 종료되었거나 기록물의 내용이 이미 외부에 공포되었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보호의 필요성이 소멸된 기록물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로 재분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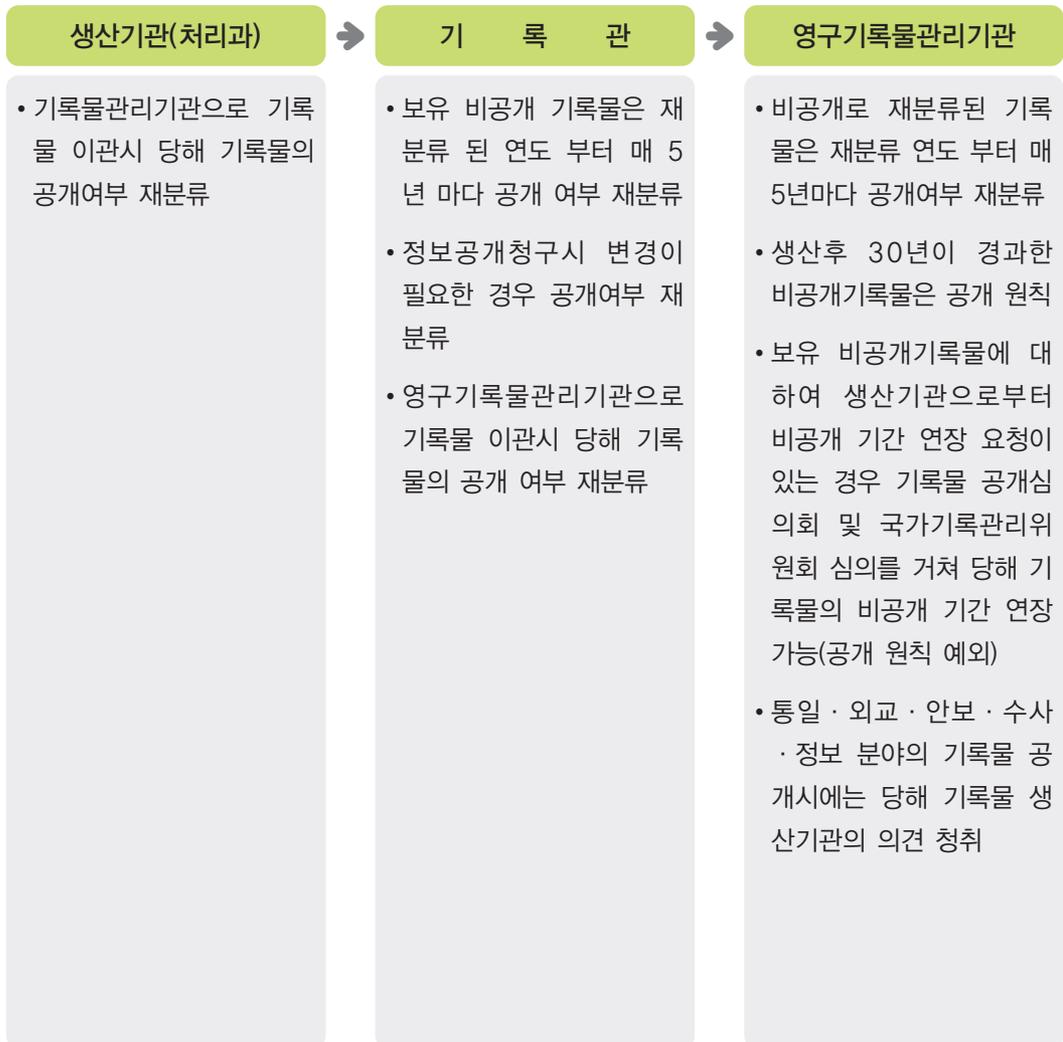
● 비공개로 재분류된 연도부터 매 5년 도래 시점

❖ 기록물관리기관은 보유 비공개 기록물에 대하여 기록물관리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분류된 연도부터 매 5년마다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 정보공개청구시 공개여부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공개여부를 재분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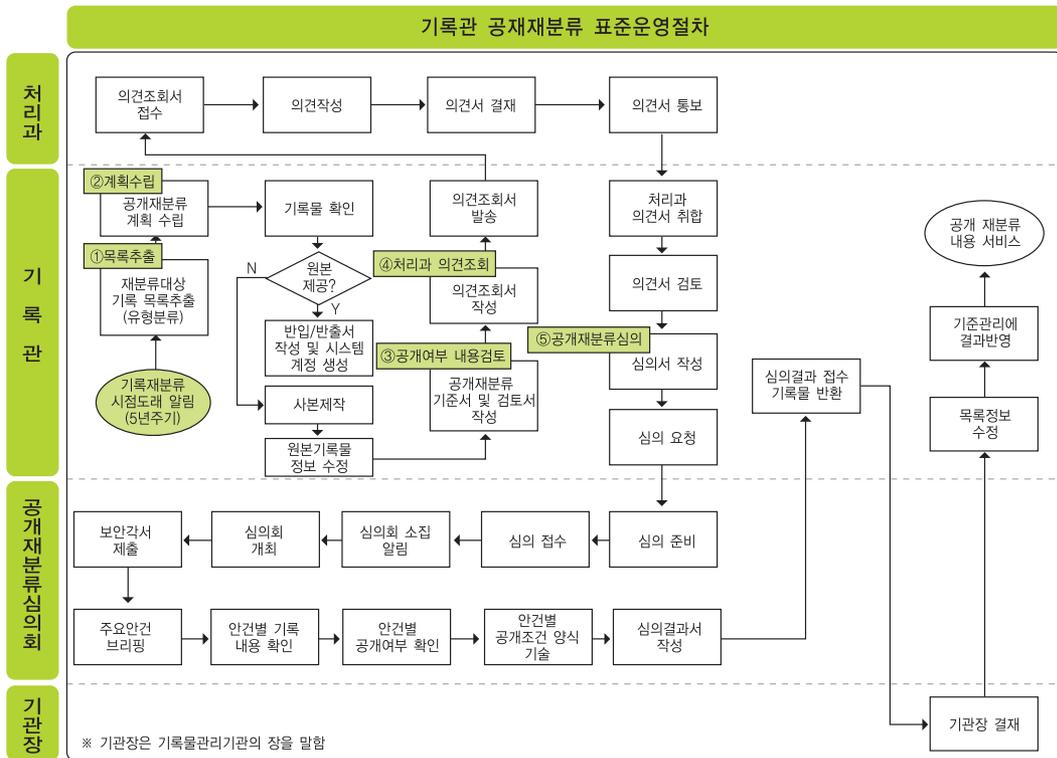
● 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물관리법 시행일 ('07. 4. 5)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중 비공개로 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09년 6월 30일까지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그림1] 기록물관리기관별 공개재분류 시점

3. 5년 주기 공개재분류 프로세스



(그림2) 기록관에서의 공개재분류 프로세스

① 비공개 기록물 목록 추출

- 비공개 기록물 중에서 특정 사안으로 인해 공개되어야 할 기록이나 5년 주기 도래 비공개 기록물 목록을 추출하여 재분류 검토대상을 선정한다.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 담당자는 보유하고 있는 비공개 기록물 중 재분류 시점으로부터 5년이 도래한 재분류 대상 기록물의 목록을 추출한다.¹⁾

※ 기록물관리법 제35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따라 기록물 이관 시 처리과에서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수시점으로부터 5년이 도래한 기록물이 재분류 대상이 된다.

비공개 기록물 목록 양식(안)

일련 번호	전자 기록 여부	기록 물 철 제목	철 생산 년도	철 종료 년도	생산 부서	기록물 건 제목	생산 년도	비공개 (부분공개)		상태평가		사본제작		위치 정보
								사유	만료 여부	결락 여부	수량 확인	복사 출력	CD 수록	

- 일련번호 : 해당 기록물 건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여되는 번호
- 전자기록여부 : 해당 기록물 건이 전자기록인지의 여부
- 기록물 철 제목 : 해당 기록물 건이 포함된 기록물 철의 제목
- 철 생산년도 : 해당 기록물 건이 포함된 기록물 철의 생산년도
- 철 종료년도 : 해당 기록물 건이 포함된 기록물 철의 종료년도
- 생산부서 : 해당 기록물 건이 생산된 처리과
- 기록물 건 제목 : 해당 기록물 건의 제목
- 생산년도 : 해당 기록물 건이 생산된 연도
- 비공개 사유 설명 : 기록물 건 생산 당시 비공개되었던 사유를 정보공개법

1) 부분공개 기록물도 비공개 대상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재분류대상 목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제1항 각호에 의해 기술

- 비공개 사유 만료 여부 : 비공개결정 당시의 사유가 만료되었는지의 여부
- 상태평가/결락여부 : 해당 기록물의 결락여부
- 상태평가/수량확인 : 해당 기록물의 분량 확인
- 사본제작/복사출력 : 해당기록물의 종이기록물 사본 제작 여부
- 사본제작/CD수록 : 해당 기록물의 CD 사본 제작 여부
- 위치정보 : 해당 기록물의 위치 정보

● 재분류 대상 비공개 기록물의 유형 분류

- ❖ 처리과별, 기록물 유형별 특성 및 비공개 대상정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재분류 대상 기록물을 처리과별, 기록물 유형별(고유업무, 공통업무)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② 계획수립

- 기록관담당자는 누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공개재분류를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안)을 수립한다. 계획서에는 다음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공개재분류 수행주체 및 책임자
 - 전체 기간 및 일정
 - 기록물 원본 반출 여부
 - 기록물 접근허가 여부
 - 기록물 사본제작 여부
 -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 구성 및 심의 방법

● 공개재분류대상 기록물 확인

❖ 기록관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공개재분류대상 기록물을 확인한다.

확인 대상	확 인 방 법	
	전자기록물	비전자기록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록물의 위치 • 해당 기록물의 분량 • 해당 기록물 목록과 실물 일치 여부 • 해당 기록물의 첨부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을 활용해 검색하여 해당 기록물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록을 소지하고 서고에서 해당 기록물 확인

❖ 기록관담당자는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 내규를 확인한 후,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 위원들에게 원본을 제공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 심의회 위원들에게 원본 제공 : 공개재분류 대상기록물이 너무 많아 사본제작비용이 부담될 때

- 심의회 위원들에게 원본 미제공 : 쟁점이 되는 사안이 없을 때

❖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 위원들에게 원본을 제공하는 경우, 기록관담당자는 비전자기록물에 대해서는 반출을 위한 반출/반입서를 작성한다.

❖ 전자기록물에 대해서는 시스템 관리자에게 요청하여 비공개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임시계정을 발급받는다. 임시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열람만 가능한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 위원들에게 원본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기록관담당자는 심의용 사본을 제작한다. 다만, 해당 비공개기록물의 사본이 이미 제작되어 있다면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사본 제작 후에는 원본과 내용상 다르지 않다는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본 제작 대상과 방법은 아래와 같다.

대 상	제 작 방 법	고 려 사 항
비전자기록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본을 복사한 후 사본임을 확인하기 위한 도장을 찍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공개기록물은 외주 업체에서 사본제작을 할 수 없으므로, 기록관에서는 사본 제작을 위한 공간과 장비를 마련해 두어야 함 기록관내에서의 사본 제작은 반출로 보지 않음
전자기록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본 제작 포맷과 저장매체를 결정 첨부문서 등 심의에 필요한 기록물이 누락되지 않게 주의하여 사본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시적 열람을 위한 것이므로, 저렴하고 이용이 편리한 매체(CD, DVD 등)를 이용 목록과 순서를 맞춰 사본 제작

❖ 기록관담당자는 제작된 기록물 사본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사본제작 여부를 시스템의 기록물 등록정보에 입력한다.

③ 공개여부 내용검토

● 기록관담당자는 같은 유형의 기록물에 대해서는 공개 조건을 고려하여 공개여부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정보공개법이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 이라 함) 및 타 관련 법령의 기준과 일치하며, 공개관련 사례, 결정, 정책 등을 고려하여 공개여부가 재분류될 수 있도록 기록물 공개재분류 기준서 및 재분류 검토서를 작성한다.

❖ 처리과별, 기록물 유형별 재분류 기준서를 작성한다.

※ 기관별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하며 기록물에 따라 공개재분류 기준이 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다시 반영되기도 한다.

- ❖ 재분류 기준서를 토대로 기록물 건별 재분류 검토서를 작성한다.
 - ※ 정보공개법에 따라 각급 기관별로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
- 비공개 기록물 공개재분류 검토서는 재분류 기준서를 참조하여 기록물 건(쪽)별로 공개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처리과 의견조회 및 기록물 공개재분류 심의 안건 상정시 활용하고 재분류 결정 후에도 비공개 기록물의 5년 주기 재분류를 위한 대상 목록 선정 및 재분류 시 활용한다.
- 기록관에서는 실효성 있는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운영을 위해 소관기관의 공개·비공개 기록물 현황조사 및 유형분석 등을 통해 내실 있는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 생산기관별 분류

- ▶ 운영지원과, 감사담당관실, 인사기획과 등 기록이 생산된 처리과별로 1차 분류

● 고유업무와 공통업무로 분류

- ▶ 고유업무는 해당부서에서만 수행하는 업무로 다른 업무와 구별하여 분류
(예) 중앙노동위원회 심판과의 노동쟁의 심판업무, 국방부 예비전력과의 예비군관련 업무 등
- ▶ 공통업무는 각 부서마다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로 유형별로 동일한 공개기준을 적용하여 분류
(예) 감사, 인사, 회계, 복무관리, 국유재산, 시설관리 업무 등

● 기록생산 맥락·업무 성격별로 분류

- ▶ 업무유형을 다시 기록생산 맥락·업무 성격별로 세분화
(예) 인사 : 인사발령, 인사기록카드, 임용, 징계, 상훈, 복무관리 등
인허가 : 법인설립신고, 법인전출입관계, 제각법인관계 등

비공개 기록물 공개재분류 기준서 작성방법

- 각 유형별 재분류 기준서를 작성한다.(예시1 참조)
- 기록물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상세내용과 그 간의 공개 이력을 작성하고, 재분류 검토 의견, 비공개 대상 정보 등을 기술한다.
- 기준서를 토대로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따라 기록물건별 공개여부, 비공개 대상 정보, 공개 쪽 설정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예시2 참조)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72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①공공기관이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건단위 또는 쪽단위로 공개 여부를 구분하고, 비공개 기록물의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장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예시 1

비공개 기록물 공개재분류 기준서

● 검토번호 : 2009-00과(팀)(5년)

대 상 기 록 물	
기록물 유형	<input type="checkbox"/> 외교 <input type="checkbox"/> 국방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감사 <input type="checkbox"/> 소청·소원·소송 <input type="checkbox"/> 인사·징계 <input type="checkbox"/> 수사 <input type="checkbox"/> 정보·보안 <input type="checkbox"/> 외사 <input type="checkbox"/> 법무·행형 <input type="checkbox"/> 법령·예규 <input type="checkbox"/> 인·허가 <input type="checkbox"/> 국유재산 <input type="checkbox"/> 시설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병무 <input type="checkbox"/> 건설·토목 <input type="checkbox"/> 토지 <input type="checkbox"/> 지방재정 <input type="checkbox"/> 지방행정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 <input type="checkbox"/> 기타
생산기관 및 처리부서	감사원 기획관리실, 총무과, 사무처, 감사원 제1국~제7국
기록물 제목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결산검사보고서, 감사결과통보서, 감사원 회의록, 내훈원안
생산년도	1993년~2000년
수 량	690권
기 록 물 내 용	
개 요	<p>감사원에서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와 「감사원법」에 의하여 검사·감독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로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결산검사보고서, 감사결과통보서, 감사원 회의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명 : 감사결과처분요구서(650권) <p>〈감사결과처분요구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조치사항으로 감사위원회 최종의결을 거쳐 수감기관 및 공무원에게 송부되는 최종보고서이다. 감사실시개요(목적, 범위, 중점, 기간, 감사결과(종합평가, 분야별 실태 및 문제점), 조치할 사항, 처분요구사항명세(처분요구 및 통보사항일람표 및 통보사항명세), 현지조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명 : 결산검사보고서(26권)

상세내용	<p>헌법 제99조 및 감사원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과 회계를 검사한 결과로 감사결과 및 처분내용이 기재되어 있다.</p>
	<p>● 철명 : 감사결과통보서(11권)</p>
	<p>정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결산 검사와 감사결과에 대한 통보서로 감사처리결과에 대한 통보요청(내부결재), 감사결과통보서, 감사활동결과 정보서 등으로 구성된다. 감사결과 통보요청은 감사원장이 수감기관에 발송한 것으로 비위 관련 공무원에 대한 수감기관의 처분결과를 회신하는 내용으로, 감사내용에는 비위 관련 공무원의 성명, 소속, 주소 및 감사결과 적출된 위법 부당한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p>
	<p>● 철명 : 감사위원회의 회의록(2권)</p>
	<p>감사위원회는 감사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감사원 감사정책 및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 변상책임의 판정·징계 및 시정·개선요구 사항, 재심의 및 심사청구 결정에 관한 사항을 등을 의결한다. 본 회의록에는 감사위원회 의사규칙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및 의장 성명, 주심위원(원심위원), 소관국과 및 관련기관, 부의안건 제목 및 면수, 주심의원의 의결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만, 본 의사규칙에 규정된 서식 제3-3의 “부의사항(주심 위원 의견진술, 발언요지, 의결내용, 표결 결과, 감사기준, 준칙, 관행, 태도)”은 주심위원 등의 진술 및 발언을 기록한 부분인데 본 회의록에는 누락되어 있다.</p>
	<p>● 철명 : 내훈원안(1권)</p>
	<p>감사원 조직개편 등으로 신설·폐지되는 부서의 업무 분장 개정에 관한 내용으로 총무과에서 생산된 문서이다. 1980년 감사원 사무분장규정 개정(안)과 별첨자료로 각국실업무분장개선(안)이 첨부되어 있다. 당시 개정으로 민원담당관이 신설되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신설된 동력자원부 및 환경청소관 사무 분장이 지정되었다.</p>

재분류 결과			
재분류 유형	기존 공개이력	재분류 결과	사유 및 근거
5년	부분공개/비공개	공개/부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7호
검 토 의 견			
<p>《감사결과처분요구서》는 감사원 제1국~제6국에서 생산된 문서로 부분공개 및 비공개로 구분되어 관리되어 왔다. 공공감사의 목적은 감사대상기관의 회계를 검사·감독하고 그 사무와 소속직원의 직무를 감찰함으로써 공공부분의 책임성 확보와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함에 있다. 따라서 <감사결과처분요구서>는 국민 세금의 지출 내역 및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 감찰 결과물로서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를 위해서 공개되어야 할 사항이며, 행정참고나 학술열람목적으로 활용될 가치가 높다. 현재 감사원은 홈페이지에 감사결과처분요구서 전문을 게재하고 있으며, 감사분야, 처리부서, 관련기관, 키워드별로 검색할 수 있게 하였다. 다만, 본 <처분요구서> 중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기관명을 제외한 개인, 단체 및 법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6,7호에 의하여 비공개하고, 나머지 내용은 공개할 수 있다.</p> <p>《결산검사보고서》는 감사원 총무과 및 기획관리실 결산담당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비공개(6호)로 구분되어 관리되어 왔다. <결산검사보고서>는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과 회계에 대한 감사결과 및 처리결과물로서, 세금의 지출 내역 및 이에 대한 감찰결과는 국민이 마땅히 알아야 할 정보에 속한다. 감사원은 매년 결산검사내용과 처리내용을 주요 사례별로 묶어서 『결산검사보고』로 간행하는 동시에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있다. 감사결과 및 처리내용에서 비위 관련 공무원 개인에 대한 식별정보, 공공기관 이외의 단체 및 법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1제항6,7호에 의하여 비공개하고, 나머지 내용은 공개할 수 있다.</p> <p>《감사결과통보서》에는 감사결과 처분대상자 및 비위관련자의 인적사항(성명, 소속, 지위)이 기재되어 있어서 개인식별이 가능하며, 공개 될 시 개인의 명예 훼손이 우려되므로 개인정보는 비공개하고, 그 외에 소속기관명, 비위사실 혹은 위법 적출 사실(개요)은 공개할 수 있다.</p>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은 감사원 총무과에서 생산된 것으로 부분공개(6호)로 구분되어 관리되어 왔다. <회의록>상의 부의안면수, 부의안건, 소관국과 및 관련기관, 부의안건, 의결 내역은 의결사항으로 공개할 수 있으나, 주심위원 및 출석위원과 부의안건 상의 청구인 개인식별정보는 6호에 따라서 공개하지 아니한다.

《내훈원안》은 비공개로 구분되어 관리되어 왔으나 본 철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분장에 대한 기록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상당의 비공개 대상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공개로 재분류한다.

비공개 대상정보	개인, 단체 및 법인식별정보	
생산부서(처리과) 의견조회	문서번호	
	의견	

기록물 상세 비공개 대상정보	
대상 기록	비공개 대상정보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개인, 단체 및 법인 식별정보
《결산검사보고서》	비위 공무원 식별정보, 개인, 단체 및 법인 식별정보
《감사결과통보서》	처분대상자 및 비위관련자 개인정보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감사위원회 주심위원 및 출석위원, 부의안건 상의 청구인 개인식별정보
《내훈원안》	해당사항 없음

기술항목

대상기록물

- ▶ 기록물 유형 : 보유 기록물을 생산기관별, 기록물 업무 유형별로 분류
- ▶ 생산기관 및 처리부서 : 기록을 생산한 기관 및 부서
- ▶ 기록물 제목 : 재분류 대상 기록물 제목
- ▶ 생산년도 : 재분류 대상 기록물이 생산된 연도로서 포괄연도로 기재
- ▶ 수량 : 재분류 대상 기록물의 수량, 권 또는 건으로 표기

기록물 내용

- ▶ 개요
 - ❖ 대상 기록물의 생산맥락, 대상 기관에서의 업무의 중요도 등 재분류 대상 기록물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간략하게 기술
- ▶ 상세내용
 - ❖ 동일 유형의 기록물별로 재분류 검토 및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기술
 - ❖ 기록의 구성 및 편철방식, 주요 기록물 건명, 기록 구성 항목 등을 기재하며 비공개 대상정보가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하여 재분류 검토

재분류 결과

- ▶ 재분류 유형 : 5년주기, 이관시 등 재분류시점별 유형으로 구분하거나 기록물 유형별 구분(예 : 인사의 경우 인사발령, 징계, 상훈 등 세부유형으로 구분)
- ▶ 기존 공개이력
 - ❖ 이전에 공개분류 또는 재분류 되었다면 공개이력을 기재
 - ❖ 공개여부, 공개결정일, 비공개 대상정보 등 기재
- ▶ 재분류 결과
 - ❖ 공개검토를 완료하고 재분류 결과를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로 기재
- ▶ 사유 및 근거 : 재분류 결과를 도출하게 된 사유나 근거가 있는 경우 기재

검토의견

▶ 재분류 의견

- ❖ 대상 기록물의 유형, 주요내용 및 상세내용을 참고하여 재분류 검토 의견 서술
- ❖ 대상 기록의 재분류 검토 근거 법률, 규정 및 최근의 공개 동향을 함께 기술
- ❖ 동일 유형의 기록물 내에서 공개분류를 다르게 적용해야 할 경우 유형별 공개기준과 비공개 대상정보 기재
- ❖ 재분류 검토 의견을 공개,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로 구분하여 이유를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비공개 대상정보가 있는 경우 명확하게 항목 기재

▶ 비공개 대상정보

- ❖ 비공개 대상정보가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항목 기재

처리과 의견조회

- ▶ 문서번호 : 처리과 의견조회 결과 문서번호
- ▶ 의견 : 재분류 대상 기록물 기준에 대한 처리과 의견

예시 2

비공개 기록물 공개재분류 검토서

관리 번호	기록물 철명	생산 기관	생산 년도	건 번호	건 명	시작 쪽	끝 쪽	공개 구분	공개 제한 유형	재분류 검토일	재분류 검토 의견	재분류 공개 구분	재분류 공개 제한 유형	비공개 대상 정보	공개 제한 쪽
00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	감사원	1990	4-1	감사 결과 불문 사항 통지	67	67	비 공 개	6	070813	비공개 사유 없음	공개			
00	감사 결과 통보서	감사원	2000	2-1	직무 관련 금품 수수	11	14	비 공 개	6	070902	감사결과 통보로 비위 관련자 등의 개인 식별 정보를 제외 하고 공개	부분 공개	6	금품수수 관련자 성명, 소속, 직위 주소, 계좌 번호	11-14
00	인사발령 원본	재정 경제부 총무과	1990	9-1	인사 발령	112	113	비 공 개	6	070902	인사발령 기록으로 개인식별 정보를 제외 하고 공개	부분 공개	6	주민등록 번호, 주소	112 -113
00	1993년 6급이하 임용철(1)	재정 경제부 총무과	1993	1-1	임용 결과 통보	1	36	비 공 개	6	070902	임용기록으로 개인식별 및 신상정보가 다수 포함 되어 비공개	비공개	6		

기 술 항 목

- ▶ 재분류 검토일 :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은 매 5년마다 재분류해야 하므로 재분류 검토 일 기재
- ▶ 재분류 검토의견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재분류 검토의견 기재
- ▶ 재분류 공개제한 유형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1호~8호중 해당 항목 기재
- ▶ 비공개 대상정보 : 비공개 대상정보(주소, 본적, 주민등록번호 등)를 구체적으로 기재
- ▶ 공개 제한 쪽 : 비공개 대상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쪽(페이지) 기재

④ 처리과 의견조회

- 기록관담당자는 재분류 대상기록물을 생산한 처리과를 대상으로 공개재분류 의견 청취
 - ❖ 처리과별·유형별 재분류 대상목록 및 재분류 기준서(검토서), 공개재분류대상 기록물 목록에 대한 의견서를 발송하고, 처리과 의견 청취 및 협의·조정
- 처리과 의견조회 결과 기록물관리기관과 의견이 다를 경우 충분히 협의·조정하고, 그 결과를 기준서 및 검토서에 반영
- 기록관담당자는 심의대상 비공개기록물의 비공개사유가 현재도 유효한지 혹은, 공개되어야 할 대상인지 여부를 포함하여 기록물 건별로 의견을 달 수 있는 서식을 마련한다.

공개재분류 대상 기록물 목록에 대한 의견서(안)

일련 번호	전자 기록 여부	기록 물 철 제목	철 생산 년도	철 종료 년도	생산 부서	기록물 건 제목	생산 년도	기록물 건 내용요약	비공개 (부분공개)		처리과		비고
									사유	만료 여부	의견	사유	

- 일련번호 : 해당기록물 건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여되는 번호
- 전자기록여부 : 해당기록물 건이 전자기록인지의 여부
- 기록물 철 제목 : 해당 기록물 건이 포함된 기록물 철의 제목

- 철 생산년도 : 해당 기록물 건이 포함된 기록물 철의 생산년도
- 철 종료년도 : 해당 기록물 건이 포함된 기록물 철의 종료년도
- 생산부서 : 해당 기록물 건이 생산된 처리과
- 기록물 건 제목 : 해당 기록물 건의 제목
- 생산년도 : 해당 기록물 건이 생산된 연도
- 기록물 건 내용 : 해당 기록물 건의 중심내용 요약 기술
- 비공개사유 설명 : 기록물 건 생산 당시 비공개되었던 사유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에 의해 기술
- 비공개 사유 만료 여부 : 비공개결정 당시의 사유가 만료되었는지의 여부
- 처리과 의견 : 기록관에서 제시한 기준을 참고하여, 해당 기록물 건의 공개여부에 작성하거나, 기록관의 기술에 동의함을 작성
- 처리과 의견 사유 : 처리과 의견란에 작성한 내용의 사유 기술
- 비고 : 재분류시 참고할 수 있는 특이 사항

- 기록관담당자는 해당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수신자로 하여, 공문서를 통해 의견 조회서를 발송한다. 발송 시에는 의견서의 회신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 각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책임자는 기록관이 발송한 의견 조회서를 접수한다.
- 각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책임자는 기록관이 발송한 의견 조회서를 바탕으로, 각 기록물 건에 대한 의견을 작성한다. 의견 작성 시에는, 의견의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록물의 비공개 의견을 작성할 때는, 비공개에 대한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처리과 의견 작성시 참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공개재분류 기록물 기준서 및 검토서

- 기록관리기준표
-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 각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책임자는 작성한 의견서를 각 과·실장에게 보고하고, 각 과·실장은 의견서를 검토하여 결재여부를 판단한다.
- 각 과·실장의 결재 후에,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책임자는 결재된 의견서를 공문서를 통해 기록관으로 발송한다.

《처리과 의견조회시 유의할 점》

기록관에서 처리과에 의견 조회시 처리과에서 기록물의 비공개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전체 비공개' 또는 적절한 비공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도록 비공개사유와 기간을 분명히 명시하도록 한다.

⑤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 심의

처리과 의견조회 및 조정을 거쳐 확정된 재분류 결과는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에 상정·심의를 권장

- 공개여부 결정이 어렵거나, 처리과와 의견이 상이한 경우 심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심의자료 준비
 - ※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공개심의회를 준용하여 정보공개심의회와 별도로 심의회 구성 가능

※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 심의는 필수사항이 아님

● 기록관 심의

- ❖ 기록관담당자는 각 처리과별로 접수한 의견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처리과의 회신이 적합한지 검토한다. 예를 들어, 공개되어야 할 기록이 타당한 이유 없이 비공개가 요청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한다.
- ❖ 기록관담당자는 미리 준비된 심의서 양식에 따라,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에 제출할 심의서를 작성한다.

심 의 서 (안)

일련 번호	전자 기록 여부	기록 물 철 제목	철 생산 년도	철 종료 년도	생산 부서	기록물 건 제목	생산 년도	비공개 (부분공개)		처리과		기록관		참고 자료
								사유	만료 여부	의견	사유	의견	사유	

- 일련번호 : 해당기록물 건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여되는 번호
- 전자기록여부 : 해당기록물 건이 전자기록인지의 여부
- 기록물 철 제목 : 해당 기록물 건이 포함된 기록물 철의 제목
- 철 생산년도 : 해당 기록물 건이 포함된 기록물 철의 생산년도
- 철 종료년도 : 해당 기록물 건이 포함된 기록물 철의 종료년도
- 생산부서 : 해당 기록물 건이 생산된 처리과
- 기록물 건 제목 : 해당 기록물 건의 제목
- 생산년도 : 해당 기록물 건이 생산된 연도
- 기록물 건 내용 : 해당 기록물 건의 중심내용 요약 기술

- 비공개사유 설명 : 기록물 건 생산 당시 비공개되었던 사유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에 의해 기술
- 비공개 사유 만료 여부 : 비공개결정 당시의 사유가 만료되었는지의 여부
- 처리과 의견 : 기록관에서 제시한 기준을 참고하여, 해당 기록물 건의 공개여부에 작성하거나, 기록관의 기술에 동의함을 작성
- 처리과 의견 사유 : 처리과 의견란에 작성한 내용의 사유 기술
- 기록관 의견 : 앞서 작성된 사항들을 참고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에 의거한 변화사항이 없는지 고려하여, 해당 기록물 건에 대한 기록관의 의견을 기술
- 기록관 의견 사유 : 기록관 의견에 작성한 내용의 사유 기술
- 참고자료 : 재분류시 참고할 수 있는 특이 사항

❖ 기록관담당자는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공개재분류 심의를 요청한다.

●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 준비

❖ 기록관은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를 구성한다. 다만,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는 독립적으로 설치, 운영될 수도 있지만, 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가 공개재분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기록관담당자는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 위원 모두가 기록물 사본 혹은 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다. 준비 물품은 다음과 같다.

- 개인 컴퓨터 : 기관에서 이용하는 시스템과 동일한 프로그램이 모두 구축되어 있는 일반 컴퓨터(보안 및 시스템 환경 포함)

- 시스템 접근 허용 시, 시스템 사용 계정 배포
- 장갑 : 흰색 면장갑(비전자기록 열람 시 모두 착용할 수 있을 만큼 준비함)
- 마스크
- ❖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 위원장은 기록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접수한다.
- ❖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 위원장은 각 위원들에게 소집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이 기재된 소집안내문과 보안각서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보안각서(안)

본인은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를 통한 공개재분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열람하게되는 비공개 기록물과 관련된 일체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누설할 시에는 그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 및 직위	성 명	날 인

년 월 일

○○○기관장 귀하

참고 : 「기록물관리법」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 개최
 - ❖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 위원장은 반드시 기록관 담당자가 출석하였음을 확인한 후, 위원장과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심의회 개최를 선포한다. 일반적으로 기록

관담당자는 회의록작성, 주요안건 브리핑,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 위원이 요청할 경우 기록물 관련 의견 제시 등의 역할을 한다.

- ❖ 기록관담당자는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 위원들이 작성한 보안각서를 접수한다.
- ❖ 기록관담당자 혹은, 심의회 위원장은 기록관에서 제공한 심의서를 바탕으로, 주요 안건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한다. 브리핑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기관의 기록관리기준표 설명
 - 기관의 비공개 세부기준 설명
 - 이전 공개재분류 당시의 상황 설명
 - 기록물별 공개재분류 기준 설명
 - 각 안건별 특이사항 설명

● 공개재분류 심의

- ❖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는 기록물 안건별로 비공개사유를 검토하고 특이사항을 확인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부서,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 이외의 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 위원장은 기록관담당자가 작성한 심의서를 바탕으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가결한다. 가결 방식은 위원회 내규에 따른다.
- ❖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 심의 결과를 취합하여, 심의결과서를 작성한다.

심의결과서(안)

일련번호	기록물 철 제목	철 생산년도	철 종료년도	기록물 건 제목	생산년도	생산부서

전자 기록 여부	비공개 (부분공개)		처리과		기록관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		
	사유	만료 여부	의견	사유	의견	사유	의견	사유	근거 세부기준

공개결정여부	공개특별조건

- 일련번호 : 해당기록물 건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여되는 번호
- 전자기록여부 : 해당기록물 건이 전자기록인지의 여부
- 기록물 철 제목 : 해당 기록물 건이 포함된 기록물 철의 제목
- 철 생산년도 : 해당 기록물 건이 포함된 기록물 철의 생산년도
- 철 종료년도 : 해당 기록물 건이 포함된 기록물 철의 종료년도
- 생산부서 : 해당 기록물 건이 생산된 처리과
- 기록물 건 제목 : 해당 기록물 건의 제목
- 생산년도 : 해당 기록물 건이 생산된 연도
- 기록물 건 내용 : 해당 기록물 건의 중심내용 요약 기술
- 비공개사유 설명 : 기록물 건 생산 당시 비공개되었던 사유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에 의해 기술
- 비공개 사유 만료 여부 : 비공개결정 당시의 사유가 만료되었는지의 여부

- 처리과 의견 : 기록관에서 제시한 기준을 참고하여, 해당 기록물 건의 공개여부에 의견을 작성
- 처리과 의견 사유 : 처리과 의견란에 작성한 내용의 사유 기술
- 기록관 의견 : 앞서 작성된 사항들을 참고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에 의거한 변화사항이 없는지 고려하여, 해당 기록물 건에 대한 기록관의 의견을 기술
- 기록관 의견 사유 : 기록관 의견에 작성한 내용의 사유 기술
-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 의견 :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모두 기술
-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 의견 사유 : 각 위원들이 의견을 내면서 제시한 사유를 기술
- 근거 세부기준 :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에서 일정의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의 직접적 근거가 되는 세부기준을 제시함
- 공개결정 여부 : 해당 기록물 건의 공개재분류 최종 결정 사항
- 공개특별조건 : 특정 조건에 따라 기록물에 대한 공적 공개 허용의 적절성을 명료한 문장화 하여 작성. 예) ‘열람은 가능하나 사본은 불가’, ‘열람만 가능’ 등

- ❖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 위원장은 심의결과서를 기록관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 ❖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는 심의과정에서 열람한 원본기록물 및 기록물 사본을 기록관에 반환한다. 기록관담당자는 원본을 반출했을 경우에는, 반출/반입서를 작성하고, 해당기록물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지 않았는지 철저히 확인한다. 사본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해당 사본을 전부 회수하고 전부 회수 되었는지를 철저히 확인한다. 반환된 기록물 사본은 폐기하기 보다는, 이후 기록물 공개시점 이후 이용을 위해 활용 가능하도록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 심의 결과서 접수 및 결과반영
 - ❖ 기록관담당자는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접수한다.
 - ❖ 기록관담당자는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기관장(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는다.
 - ❖ 기록관담당자는 비공개기록물이 “공개”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목록정보 등에 반영하여 관리하고, 비공개로 결정된 기록물의 경우에는 공개조건 및 특수 조건을 기록물 목록정보에 반영하여 관리한다.
 - ❖ 기록관담당자는 공개로 재분류된 기록의 세부사항을 비공개 세부기준에 반영하도록 한다.
 - ❖ 기록관담당자는 공개로 결정된 기록물 목록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게시하고, 관련 사항을 홍보한다.

산 출 물

- 공개재분류 계획서
- 공개재분류 대상 기록물 목록
- (반출할 경우) 반출/반입서
- 처리과 의견조회서
- 심의서
- 보안각서
- 공개재분류 심의결과서
- 공개재분류 결과보고서

4. 재분류 시 주의사항

- 유사한 유형의 기록물 공개 조건을 고려하여 공개여부가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동일·유사 유형의 기록물의 재분류 시 일관성 유지
- 공개·비공개 기준은 정보공개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및 다른 관련 법령의 기준과 일치되어야 한다
- 공개관련 사례, 결정 혹은 정책, 판례,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한다
- 공개결정시 생산기관 이외 유사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한다
 - ❖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기록물관리기관에는 공통되거나 유사한 기록물이 보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반적 용례를 구하기 위해 수시 협조

5. Q&A

Q1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은 무엇인가요?

A1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및 다른 법령의 기준에 일치하도록 각급 기관은 기관별로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기록관에서는 실효성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운영을 위하여 소관 기관의 공개·비공개 기록물 현황조사 및 유형분석 등을 통하여 내실 있는 기준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각급 기관에 구성되어 있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합니다. 특히,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비공개 규정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Q2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작성목적과 법적근거는 무엇인가요?

A2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증진과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 명확화, 유형화로 업무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정보공개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국민에게 신속한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적근거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으로,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Q3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분야 비공개 기록물은 생산기관 의견조회를 하는데 생산기관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되는지요?

A3 기록물관리법 제35조 제5항에 의하면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 비공개 기록물은 생산기관 의견조회 및 협의를 거쳐 공개를 결정합니다. 생산기관 의견을 반영하되, 기록물관리법 및 정보공개법 등 공개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협의 조정하게 됩니다.

Q4 기록관에서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비공개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공개로 재분류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4 기록물관리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비공개 기록물은 생산 후 30년이 경과하면 모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특수기록관에서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가 30년 이상으로 연장되는 기록물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록관에서 불가피하게 30년 경과 비공개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을 자체적으로 재분류하시면 됩니다.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중 30년경과 비공개기록물에 대해 생산기관의 비공개 연장요청이 있을 경우 기록물공개심의회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 기록물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기록물관리법 제35조제4항)

Q5 기록물관리법에 의하면 생산년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비공개기록물은 모두 공개함이 원칙이고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은 매 5년마다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하며, 기록물공개여부와 관련하여 기록물공개심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 기록물공개심의회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록관이나 특수기록관에서는 기록물 공개여부,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심의와 관련하여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5 기록물공개심의회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구성·운영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기록관, 특수기록관에 기록물공개심의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정보공개법에 의해 각급 공공기관에 구성되어 있는 정보공개심의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심의회를 활용할 경우 운영규정에 5년 주기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심의 등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공개재분류 심의와 관련된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록물 공개재분류심의회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사

항은 아니지만 공개재분류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회 상정을 권고합니다. 특히, 공개여부 결정이 어렵거나, 처리과와 의견이 상이한 경우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결정토록 하면 객관성 있는 공개재분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심의회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공개심의회를 준용하여 정보공개심의회와 별도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6 기록관에서 공개재분류시 반드시 공개재분류 기준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A6 공개재분류 기준서는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공개재분류 원칙을 준수하고, 기록물 건 또는 쪽별로 공개여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을 권고합니다. 또한 처리과 의견조회 시에도 기준서를 첨부하면 처리과 담당자도 기록의 내용과 공개재분류 사유 등을 참고하여 재분류 여부를 편리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준서는 기존에 국가기록원이 작성한 기관별, 유형별 기준서를 참고해서 작성,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 64쪽 비공개 기록물 유형별 공개재분류 기준 참고

Q7 '09년 6월 30일까지 재분류해야 할 기록물의 정확한 범위가 무엇인가요?

A7 기록물관리법 부칙 제5조에 의거 2009년 6월 30일까지 재분류해야 할 대상은 기록물관리기관(기록관)이 2007년 4월 5일(법 시행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비공개 기록물입니다. 따라서 처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이나 공개여부가 분류되지 않은 기록물은 대상이 아닙니다.

Q8 공개여부가 구분되지 않은 기록물은 어떤 절차를 거쳐 관리해야 하나요?

A8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개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시행령 제27에 따라 공개여부는 건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 여부 구분 관리에 대한 법적 시한은 없는 상태이나 기록물관리법의 이행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 기록물 건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개여부 구분을 위한 처리과 의견조회, 심의회 상정 등의 실무적인 절차는 기관의 상황이나 특수성에 맞게 수행하시되, 공개여부 및 공개재분류 구분관리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됩니다.

기록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①영 27조에 따른 기록물의 공개여부 구분표시는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 중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로 표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번호중 해당 번호를 괄호 안에 표시하여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된 정보

1.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록으로서 비밀로 분류된 정보
2. 공판 개시 전 소송 관련 기록(형사소송법 제47조)
3.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환경분쟁 조정법 제25조)
4.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및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공직자윤리법 제10조)
5.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 내용, 민원인의 신상정보 누설 등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6. 국가정보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 예산내역(국가정보원법 제6조, 제12조)
7. 컴퓨터 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무역업무 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8.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지방세법 제69조) 또는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제공

9.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6항)
10.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비밀에 관한 자료의 통계작성 목적 이외의 사항(통계법 제33조)

● 타 사용목적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33조)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1.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과정·여부·내용 등의 비밀유지(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변호사법 제2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6, 공인회계사법 제20조, 의료법 제19조)
3.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4. 외국환거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외국환거래법 제22조)
5.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발명진흥법 제19조)

●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법률에 의한 명령은 총리령·부령 및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2. 징계위원회의 회의(공무원징계령 제20조)
3.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관세법시행령 제64조 제2항)
4.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행정감사규정 제28조)

제 2 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1. 대북한 관련 정보수집·분석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통일관계장관 회의록, 비밀외교 협정관계문서 등
2. 군사기밀, 국방투자사업 관련 문서,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 등
3.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에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4.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 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5.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6.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7. 외국 및 국제기구 또는 부처간·기관간 협의 및 교섭에 관련된 사안으로 외교문제, 국제분쟁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 3 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교통단속, 전염병 예방, 식품, 환경 등의 위생감사 등
2. 방화·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3.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고발자, 참고인 정보 및 신고민원 조사 결과
5.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6. 특정인의 행동 예정, 가정의 구조 등이 명시되어 있어 그 결과 개개인이 범죄의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는 정보
7. 위험시설·장비의 위치·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사항
8. 생화학테러 대비 기술개발사업, 방재 방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정보
9. 건축물 등 경비 위탁에 관한 정보
10. 그 외 국민의 생명·재산 및 공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제 4 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3. 피의자의 신문조서
4. 수형자의 신분기록관련 정보
5. 수형자의 신분기록, 교도·교화작업 관련 자료, 심사자료 등에 관한 정보
6. 수사기록, 의견서, 수사보고서, 첩보보고서, 내사자료 등
7. 수용자 이송 관련 정보
8. 범죄 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9. 무기·화학·마약·독극물·방사성 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 체제에 관한 정보
10.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정보
11. 행정처분 등 공개 시 이중처벌에 해당되는 정보
12.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보안관찰 등 현행법상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보안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13. 그 외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제 5 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 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6.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7.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별 세부평가 집계 내역

8. 공직자윤리위원회·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공무원징계위원회·공익사업선정위원회·지적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9.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자치부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10.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11.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12. 조사 및 연구·개발 중간 단계의 사항 및 결과에 관한 정보
13. 대학, 시험연구기관 등의 미발표 연구보고서 등
14. 그 외의 조사 및 연구·개발 사항 및 결과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15.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 안 등과 관련된 정보
16. 주요건설계획, 각종 택지개발계획, 공유수면매립계획, 관광지개발 계획, 도시계획, 상수도계획 등 중요정책의 계획 및 검토관련 정보
17. 도시계획결정변경도, 국민주택건설계획 보고서, 화장장, 쓰레기 매립장, 기타 혐오시설 등의 설치 지역 선정 및 내부 기준에 관한 정보, 토지 매입에 관한 사항, 교섭, 계약의 대상 및 교섭의 방침, 구입예정품목 및 수량 등
18. 기타 업무의 기획 및 검토를 위해 수집된 자료 등
19. 연구·개발 중에 있는 과제에 관한 회의 및 각종 정책·개발계획 회의 등의 참석자 성명 및 발언 내용 등에 관한 정보(회의록, 의견교환기록, 회의자료, 세미나 자료 등)
20. 민원인이 비공개 요청한 민원의 회신

제 6 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개인의 인사정보
 -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4.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5. 개인 식별 정보
 - ❖ 이름, 주민등록번호, 성별, 생년월일, 출생지, 국적, 본적, 주소(이메일 주소 포함), 개인연락처(집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등
6. 가족 및 친인척 정보

- ❖ 가족구성, 친족관계, 혈족관계, 결혼·동거·별거, 결손가정, 혼인, 이혼, 이연, 인지, 양자결연, 성년후견·피후견, 주민등록번호 등

7. 개인의 습관 및 취향, 취미 정보

- ❖ 성적 취향, 음식 취향, 흡연, 음주, 취미, 여가활동, 도박성향, 비디오 대여 기록 등

8. 개인의 의료·질병정보

- ❖ 심신장애 등에 관한 정보 (장애명, 장애의 유무, 장애의 정도 등)
- ❖ 질병·부상 등에 관한 정보 (질병명, 질병력, 질병의 원인 등)
- ❖ 검사·진료 등에 관한 정보 (검사진료, 건강상담표, 검사명, 검사의 결과, 질병의 소견, 간호기록, 치료의 내용, 진료기록카드, 진료방법 등)
- ❖ 그 외 건강상태, 혈액형, 체력, 운동능력 등에 관한 사항 등

9. 개인의 양심, 사회적 활동 정보

- ❖ 사상, 신조, 신앙, 종교, 주의 주장, 반성문, 상담내용 등
- ❖ 정당 및 사회단체 가입과 활동에 관한 정보, 노조활동 등에 관한 정보, 각종 단체 가입의 유무, 각종행사·운동 등의 참가에 관한 사항 등
- ❖ 보증인, 교우관계, 추천인 등에 관한 정보
- ❖ 신문·잡지의 구독 서류, 종교법인의 직원 명부, 각종 앙케이트 조사 등
- ❖ 여행, 교통수단 이용정보 및 해외여행 및 거주사실

10. 개인의 생활방식 정보

- ❖ 요 보호세대·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 관한 사항, 각종 보조금에 관한 사항, 개인간의 분쟁·교제, 주택·면세 등의 상담 내용 등

11. 개인의 재판, 범죄 등에 관한 정보

- ❖ 검찰, 수사, 사법기관 등에서 비리 및 범죄 등에 관해 수집한 정보
- ❖ 신원조회, 범죄경력 조회 관련 정보
- ❖ 개인 신상정보를 삭제해도 해당 개인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
- ❖ 감사 및 징계에 관한 정보
- ❖ 재판·행정심판의 결과
- ❖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공개로 이중처벌이 되는 정보
- ❖ 형의 집행이나 교정에 관한 정보(수형자의 신분기록, 교화작업 관련기록, 심사 자료, 사회봉사활동에 관한 정보는 일반인에게 공개할 실익이 없고 적정한 수행을 위해 수형자에 대한 열람제한 필요)

12. 개인의 병역정보

- ❖ 군번, 계급, 제대유형, 주특기, 근무부대 등

13. 개인의 시험 및 성적에 관한 정보

-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이메일 주소 포함)

14. 개인의 학력에 관한 정보

- ❖ 출신학교명, 입학·졸업년도, 재학기간, 학업성적, 퇴학·휴학·정학 등, 클럽 활동 등의 과외활동에 관한 사항 등

15. 개인의 경력에 관한 정보

- ❖ 직장명, 사업명, 급여, 직종, 직위, 취직·퇴직년도, 재직기간, 승진·보직전보 등, 직무의 실적 평가, 직무상의 자격, 해임·정직 등의 처분, 수상력, 범죄·

위반 사실, 재생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입소력 등에 관한 정보 등

16. 개인의 재산정보(내용과 형성과정)

- ❖ 재산의 내용(부동산·동산의 종류·가격 등, 채권·채무의 내용 등), 수입(급여소득·양도소득 등의 소득금액, 보상금 등의 수입금액 등), 통장계좌번호, 납세실적 등에 관한 사항
- ❖ 거주지 소유관계·가격, 동거인수, 거주기간에 관한 사항 등
- ❖ 개인의 미발표 연구논문·연구계획서, 특허신청 등을 하기 전의 아이디어 등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개인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정보

18.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19. 단, 다음의 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공개함

- ❖ 법령의 규정에 의해 또는 관행으로서 공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정보
- ❖ 공증, 자격 등에 관한 정보(주식회사등기부 등의 상업등기부에 기록된 사항, 토지등기부·건물등기부에 기록된 사항, 자동차등록증에 기록된 사항, 저작권등록부·출판권등록부·저작권인접권등록부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선거수입·지출보고서에 기록된 사항, 건설계획서·대지 조성사업계획서에 기록된 사항, 그 외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정보)
- ❖ 공표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본인으로부터 임의로 제공된 정보(선거공보에 등재하기 위해 후보자로부터 제공된 사항)

- ❖ 개인이 자주적으로 공표한 정보(출판물에 기재된 저자명, 저자 경력 등)
 - ❖ 본래 공표가 예정되어있다고 인정된 정보(수상자 명단, 부속기관등의 위임명, 발령후의 인사이동 등)
 - ❖ 사람의 생명, 건강, 생활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 해당 개인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정보가 그 직무 수행에 관계한 정보 중에 공무원의 직위, 성명 및 해당 직무수행 내용에 관계한 정보
 - ❖ 행정기관의 직원으로서 행위를 한 정보(공문서의 발신자·수신자의 직위 및 성명, 조약·협정의 조인자명, 회계기관으로서의 지출부담행위 담당관의 성명 등)
 - ❖ 단, 공무원의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출장명령의 직원이름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됨
-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제 7 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기술 노하우 및 기술상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정보
5. 제조 및 가공 공정 상의 기술 노하우 관련 정보
6. 원재료 등에 관한 사항(원재료의 종류·조성, 그 사용량·배합, 온도·농도, 그 보관방법 등)
7. 제조 및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등에 관한 사항(기계·설비 등의 기종, 대수·규모·처리량, 기계·설비 등의 가동시간, 설비로부터 배출되는 물질의 종류·양 등)
8. 그 외 제조 및 가공 공정상의 기술 노하우 등에 관한 사항(생산 공정 상의 기계·설비 등의 배열 및 이용기술, 생산공정의 관리, 제품의 품질관리, 생산 공정 상 불량품 발생비율 등)
9. 건축·토목 및 그 외의 공사상의 기술 노하우 관련 정보
10. 건축·토목 등에 사용되는 자재 등에 관한 사항(자재의 종류·조성·방법·가공 등)
11. 건축·토목 등의 설계에 관한 사항(설계도 등에 표시된 설계자 등의 의견, 설계에 사용된 계수·계산식, 설계에 사용된 기계 등의 종류·이용기술 등)
12. 운송 및 통신상의 기술 노하우 관련 정보
13. 기계·설비 등에 관한 사항(기계·설비 등의 기종·대수·규모·처리량 등)
14. 그 외 운송·통신상의 기술 노하우 등에 관한 사항(통신 내용의 보호에 관련한 기술 등)

15.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 관련 기술상의 노하우 등
16.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계획 또는 운영상의 정보
17. 신제품 및 그 외 생산품에 관한 계획·방침 등에 관한 사항(신제품의 성능·사양, 그 개발의 정도, 그 생산공정·양산시기, 기타 생산품의 생산계획 등)
18. 원재료의 구입, 제품의 생산·출하 등의 계획·방침 등에 관한 사항(원재료의 구입에 관한 계획, 구입처와의 절충안에 관한 사항, 생산계획·출하계획 등)
19. 시설·기계 등의 교체·신규도입 등에 관한 사항(공장 신설 및 신규공장 설비 등에 관한 정보, 교체·신규 도입된 시설·기계 등의 기종·대수·규모·처리량 등에 관한 정보, 신규도입 기간·경비 등에 관한 정보 등)
20. 그 외 생산활동 계획 방침 등에 관한 사항(직원의 배치·연수 계획 등)
21. 생산품목·생산량·출하량 등에 관한 사항
22. 그 외 생산활동 상에 관한 사항(공장 등의 배치도, 공장간의 반제품 이송 등에 관한 사항 등)
23. 판매고·판매계약내용 등에 관한 사항(판매실적·계약실적·계약내용 등)
24. 거래처 등에 관한 사항(거래처 등의 명칭·거래의 내용·실적·납품사항·법인간의 제휴·하청·직원의 상호교류 등)
25. 판매방법 등에 관한 사항(판매계획, 고객과의 절충사항 및 판매 노하우에 관한 정보, 상품의 진열방법, 광고·홍보 등의 방법 등)
26. 원가 및 판매단가 등의 관한 사항(판매단가 등의 기초가 되는 원가·내역 등에 관한 정보, 이익률 등에 관한 정보)

27. 그 외 판매활동 등에 관한 사항(수주계획 · 수주경로 · 수주단가 등)
28. 경영방침 및 점포 · 영업소 등의 확장 · 신설 등에 관한 사항(매장면적의 확장 · 점포의 개장 등 기존시설의 교체, 영업소 · 사무소 · 지점 등의 신설 · 이도에 관한 정보 등)
29. 법인 · 단체의 신용 및 경영상태에 관한 정보
30. 차입금의 액수 · 차입의 상대 · 차입의 조건 · 변제계획 · 변제상황 등에 관한 정보 등
31.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개인 · 법인 등에 관한 정보, 담보의 내용 및 평가 등에 관한 정보 등
32. 예산 · 결산서, 사업실적보고서, 은행계좌번호 등 경영상태 및 자신의 내용에 관한 정보 등
33. 직원의 채용 · 직원수 · 직원배치 등에 관한 사항(채용계획 · 응모상황 · 채용상황 · 직원수 · 직원의 배치현황, 인사이동 계획 및 실행상황 등)
34. 직원의 급여 및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급여체계, 급여 · 보수 · 수당 등의 지급액, 시간외근무 체계 및 근무시간 등)
35. 법인 · 단체의 금전 출납에 관한 정보, 금전출납의 정리 상의 처리에 관한 정보 등
36. 법인 · 단체의 신상정보를 삭제해도 해당 단체를 인식할 수 있는 사항
37. 그 외 공개함에 의해 법인 · 단체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단, 법인 · 단체의 소재지, 업무연락처, 정관상 사업목적, 대표자 성명 등 일반사항은 공개가능)

제 8 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2. 개발 및 특정지구 보호구역 등에 대한 공고, 고시 전의 정보
3. 물품가격 변동 등에 대한 정보
4. 부동산개발계획

※ 본 기준은 비공개기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지속적 수정·보완이 필요한 자료임을 밝힙니다.

비공개 기록물 유형별 공개재분류 기준

1. 공통업무

※ 본 기준은 '09년 6월 현재 국가기록원에 보유중인 보존기간 30년 미경과 비공개기록물에 대한 5년 주기 공개재분류 기준으로 기록물공개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임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감사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분공개 (6호, 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결과처분요구서는 감사결과 적출된 위법 부당한 내용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결내용과 조치사항에 관한 기록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제7호에 의하여 감사원 홈페이지 <감사활동>란에 개인이나 법인단체의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
소송	국가채권소송, 국유재산 소송관계, 행정소송, 행정소송판결문, 행정소송 결정문, 손해배상관계철, 구상권 관계철, 배상결정서철, 임의변제관계철 등	부분공개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처분 등에 대한 소송관련기록들로 개인 징계, 개인 신상, 개인 재산관련 증빙서류들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판결문은 법원에서 공개하고 있으므로 행정, 민사소송 판결문, 결정문, 결정서, 재결서 등은 개인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소원	소원재결서, 헌법소원, 헌법소원심판청구철,	부분공개(6호)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처분청의 직근상급청에 제기하는 행

유 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소원	소원 등		<p>정쟁송절차로 개인 징계, 개인 신상, 개인 재산관련 증빙서류들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원재결서는 개인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행정 심판	행정심판청, 행정심판 기록, 행정심판부, 의결통고, 통지서, 송달서 등	비공개(6호) 부분공개(5호, 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청의 부당한 행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판정결과 수록, 소송관련 기록물과 유사한 기록들로 구성 • 개인 징계, 개인 신상, 개인 재산관련 증빙서류들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 행정심판결정문은 개인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준하는 정보로 진행이 종료되었더라도 공개될 경우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로 위원명을 제외하고 공개
소청	소청, 소청심사결정문, 소청결정문 등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본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으로 징계관련 기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 개인 징계처분내용으로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인사	인사기록카드 퇴직자 인사기록카드 등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본적, 병역관계, 신체사항, 재산사항, 학력, 이력사항, 징계형벌사항, 근무성적평정 등 개인 신상정보 및 개인 프라이버시 정보 다수 포함,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신원증명서, 학력증명서 등 개인기록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인사발령대장, 인사발령원본, 사령원부, 사령부, 발령대장, 인사발령사항, 공무원 호봉승급대장 등	공개 부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한 양식에 따라 발령일자, 소속및직위, 직급, 성명, 발령사항, 발령권자 등이 기재된 기록으로 공개 전출입 또는 신규임용 발령 등 개인 식별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인사명령 등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위, 직급, 성명, 발령사항, 발령일자 등이 포함되어 있고 개인 식별정보가 없으므로 공개
	인사기록정정 등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기록의 추가, 변경, 정정을 위한 변경신청서 및 개인 신상에 관한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인사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공무원 임용, 임용, 공무원채용, 신규채용, 공무원임면관계철, 전문직채용, 지방공무원공채, 시험관계철 등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 임용서, 임용조사서 등으로 인사기록카드, 이력서, 신원증명서 등 개인신상정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재직기간 합산 및 소급통산신청서, 퇴직금(퇴직연금) 청구, 퇴직연금철, 호봉재획정 등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일시금 청구서, 사망조위금신청서, 재직사항 착오에 대한 이의신청, 기여금기호 재획정, 공무원 연금카드 기재사항 정정 등의 기록 포함 인사기록카드, 연금카드, 개인이력 및 신상에 관한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인사평정 및 근무성적평가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 공무원평정규칙 제13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징계	징계관계철, 징계, 징계의결서, 공무원문책관계,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비위공무원조사보고, 징계훈계관계,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징계대상자 인적사항, 징계사유 및 경위에 대해 자세히 기술, 협의자 의견청취,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 명예훼손 우려가 높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유 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경고대장, 징계대장, 징계의결대장, 보통징계, 중앙징계위원회의결서		
상훈	상훈대장	공개 부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수훈자에 대한 자긍심과 영예성 고취를 위하여, 공적내용을 널리 알리도록 되어 있고,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지 않은 상훈대장은 공개 • 개인 식별정보가 포함된 경우는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
	공심의결서 (상훈심사원안철)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상결정 이전에 공적대상자 명부에 대한 심의 의결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 될 경우 개인의 명예훼손 및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상훈철, 상훈관계철 등	부분공개 (2호, 6호) 비공개 (2호, 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조서, 유공심의결과 보고서 등 포상명령 이외에 개인 징계 또는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 포상명령의 경우 개인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되, 무공훈(포)장, 보국훈(포)장은 공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상훈			적약기에 전시 및 전시에 상응하는 비상사태 하의 작전 등 국가기밀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비공개
	정부포상, 수범공무원 포상 등	부분공개 (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포상은 상훈기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공적과 관계없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는 제외하고 성명, 소속, 직급, 주요공적, 훈격은 공개
국유 재산	국유재산 매입, 공유 재산매각, 공유재산대부, 용지매수철, 국유 재산 분할합병, 국유 재산 등기자료철 등	공개 비공개 (3호, 6호, 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공유재산 토지매입 기록은 개인 재산 및 신분관련 기록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보호해 줄 가치가 있음. 또한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6호, 8호에 의하여 비공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에 의한 보상계획, 제31조(열람)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서(토지수용공고), 매각공고 등 행정청의 행위관련 기록은 행정문서는 공개
	국유재산용도폐지, 국유재산 관리전환 등	공개 부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유재산 관리환과 관련된 행정문서로 비공개 정보가 없으므로 공개

유 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국유 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질의 건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민원인 개인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토지등기관계철	부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재산 분할, 합병, 매각/매입 등에 의해 토지등기를 정리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개인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인허가	재단법인 설립관계, 사단법인 설립관계, 법인 임원변경 및 등기, 법인등록대장, 사단법인 대장 등	부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단체의 설립/변경/취소/폐지 등의 신고 또는 허가 사항으로 이력서, 자격증사본 등 개인 신상 및 개인 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이를 제외하고 공개 •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성명, 법인 주소, 법인명 및 단체명은 공개
시설	등기 및 지적관계철(도면), 철사설계도면 및 시방서, 청사신축공사기계설비, 공사관계철, 합숙소신축공사관계철 등	공개 비공개 (3호, 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 및 사무실 등의 신축, 건축, 전기 등 시설공사에 관한 기록으로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내용과 설계도면 다수 포함 • 중요시설 건물의 파괴 등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건축허가 신청 등 인허가 관련정보, 개인 재산 및 신분관련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6호에 의하여 비공개 • 일반에게 공개된 장소로 보안유지의 기밀성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이 소멸된 기록은 공개
법령·예규·훈령	교육규칙 조례일반, 교육규칙 공포문 등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기록은 교육규칙 개정관련 내용으로 개정사유, 개정근거, 개정내용, 신규대조표, 공포사항 등 포함
	학칙제정 및 개정 관련 철, 〇〇〇법 개정관계 철, 제도관계철, 〇〇〇 개정안, 〇〇〇규정 등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개정 관련 부서 협조문서, 입법계획, 법제저 심사의뢰, 법령 개정안 공포 등 법령개정 관련 일반 행정문서는 공개
기타	민원	부분공개 (1호, 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의하여,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보를 보호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므로 개인 식별정보 및 질의서, 탄원서를 제외하고 공개
	관인대장	부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명, 관인, 등록, 재료, 인의형상, 새긴 날, 새긴 사람(주소, 상호, 사업자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포함 • 새긴 사람 개인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개인 식별정보(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

2. 고유업무

※ 본 기준은 '09년 6월 현재 국가기록원에 보유중인 보존기간 30년 미경과 비공개기록물에 대한 5년 주기 공개재분류 기준으로 기록물공개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임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감사원	감사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결산검사보고서	부분공개 (6호, 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 세금의 지출 내역 및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 결과물로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를 위해서 공개하되, 처분요구서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비위공무원의 개인 식별정보,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기관명을 제외한 개인, 단체 및 법인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 6호, 제7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공개
		감사결과통보서	비공개(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결과통보서는 내용상 직무감찰 첩보, 정보사항으로 정보제공자, 피감사자 등의 개인 정보 또는 내사 검토 단계의 내용으로 감사업무의 특성상 공개될 경우 감사기법 노출, 자발적인 감사업무 협조자에 대한 신뢰보호 상실 등 감사업무수행 및 감사정보 수집활동에 지장을 주는 문제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비공개
		감사위원회 회의록	비공개(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회의 참석자들이 자신의 발언내용이 공개되는 것에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감사원	감사원			대한 부담과 그로 인한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하지 않거나 오해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등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비공개
	인허가	종합유성방송추진위원회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유선방송추진위원회 및 소분과 위원회 회의 및 결과보고로 공개가 가능하나, 위원 위촉 동의서, 위원 이력서, 수령증(금액, 이름, 주민등록번호, 일자), 위원회 회의록의 위원명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제외 후 공개
	민원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부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된 방송프로그램과 광고에 대한 시청자 불만의 안전과 신문투고 내용을 처리하는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회의 기록으로 공개가 가능하나, 시청자불만처리신청내용, 건의서 사본은 민원기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제외 후 공개
심사	시,도 종합유선방송국 허가심사결과 의견서, 종합유선방송국 허가, 종합유선방송허가심사	공개 부분공개(5호) 비공개(5호, 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종합유선방송국 허가심사결과 의견서는 기록물 전체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제청, 경찰청 회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 사	관련 시,도 자료, 종합유선방송 청문 관련 소명자료, 종합유선방송 허가심사 관련 민원		<p>호에 의하여 비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유선방송국 허가, 종합유선방송허가심사 관련 시·도 자료 등은 CATV 허가 관련 내용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심사과정에 관한 내용은 공개될 경우 향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비공개하고 심사결과만 공개 • 종합유선방송 청문관련 소명자료, 종합유선방송 허가심사 관련 민원 등은 민원 기록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의하여,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보를 보호하여 비공개
	기 타	독립유공자신원특이사항심사, 부정수취자처리및임정공채관계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원특이자에 대한 포상심사 및 부정수취자에 대한 처리를 다루는 기록으로 기록물 전체에 개인신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국 가 보 훈 처	수 사	민사사건철	부분공개(6호) 비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장, 답변서, 보고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하고, 판결문은 개인식별정보(이름, 주소 등) 제외하고 공개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보훈	신규등록신청처리부, 유족순위변경처리대장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유공자 신규등록신청과 유족 순위변경처리하는 기록으로 기록물 전체에 개인식별정보 및 신상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부분공개の実익이 없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공정거래위원회안건, 의결조서	부분공개(5호, 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조서의 의결결과는 공개하도록 하나, 심의 및 의결과정에 준하는 회의(합의)내용이 그대로 공개될 경우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위원명을 제외하고 공개
기획재정부	기타	보험료공제	부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료 납입영수증 샘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주민번호와 보험회사 대표이사의 주민번호는 제외하고 공개
	국제협약	IMF합의서 원본	공개 비공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식 사이트에 의향서의 저작권이 우리 정부에 있음을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정경제부에서 발간된 IMF 간행물이나 일반 경제서적에서 합의서 전문 일부가 소개되고 있는 등 출판물과 언론을 통해서 IMF 의향서 내용이 많이 알려졌으며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공개가능하나 일부 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2호에 의하여 비공개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기획재정부	소원	1994~97년 위협 소원심판 청구에 따른 의견	공개 비공개 (6호, 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헌법재판소 판결·결정문, 피상고측 변론, 상고측 의견서가 비공개대상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비공개하고, 상고측 의견서 중 첨부된 증거자료, 참고자료가 관계법령 등 이미 발간되었거나 대국민 대상으로 공포되었던 정보, 헌법재판소의 심판 회부 통지 공문과 해당 기관의 심판청구에 관한 의견 제출 공문은 공개
	감사	감사결과처분지시, 감사관계철, 감사원감사결과 처분요구	부분공개 (1호, 6호, 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대상자의 신분상 조치 부분인 징계 등 문책 사항은 개인의 명예 훼손 우려가 있고, 납세자의 인적사항, 신고 및 결정 내용, 조사내용 등 과세정보, 재산상황, 과세불복, 소송내용 등과 영업비밀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국세기본법」에 의한 납세자의 비밀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제6호, 제7호에 의하여 이를 제외하고 공개
국세청	인허가	법인설립신고서철, 법인전출입관계철, 제각법인관계철	부분공개(6호) 비공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설립신고서철, 법인전출입관계철은 법인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등과 같은 개인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생산된 지 30년 미경과 기록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국세기본법」 제81조제10항)에 의해 과세정보(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의 자료)는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국 세 청	인 허 가			<p>비밀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여 사적비밀을 최대한 보호하여 줌으로써 납세자들이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비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신청서철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납세지 관할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과세정보)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10항에 의하여 비공개 • 과세정보 이외의 자료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개인정보(신고인의 주소, 대표자 및 주주의 주민등록번호, 본적)를 제외하고 공개 • 제각법인관계철은 장기 휴·폐업 법인들에 대하여 휴면법인의 세적을 악용한 부실위장 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휴면법인의 세적을 제적한 기록물로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의 자료(과세정보)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10항에 의하여 비공개하고, 단순 공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국 세 청	인 허 가	주류판매 및 제조 면허	비공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년 미경과 기록물로 기록물공개심의회 기의결기준에 따라, 과세정보(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의 자료)는 비밀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여 사적비밀을 최대한 보호하여 줌으로써 납세자들이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국세기본법 제81조 제10항)에 의하여 비공개
	세 적 관 리	법인세적관련철	부분공개(6호) 비공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의 신설, 해산, 합병으로 인한 세적의 생성과 소멸 등 법인의 세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각종 대장에 기록한 것으로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의 자료(과세정보)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10항에 의하여 비공개하고, 회보형식의 단순 공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제6호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주세납세담보철, 사업자고유번호및 검열대장, 부가가 치세세적관리카드, 소득표준율관계철	비공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금을 관리하기 위한 기록으로 과세정보(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의 자료)는 비밀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여 사적비밀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을 최대한 보호하여 줌으로써 납세자들이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국세기본법 제81조 제10항)에 의하여 비공개
	소 송	행정소송	비공개 (3호, 6호, 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도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관련 행정소송으로 개인의 재산권 보호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 사생활의 자유 또는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제6호, 제7호에 의하여 비공개
관 세 청	경 비 정	관공선 통폐합 관계, 감시정 내규, 감시정건조관계	공개 비공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시정배치, 감시정 내부시설 등은 공개시, 관세청 감시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비공개 감시정 건조계획, 감시정 건조세부계획, 감시정 건조세부추진계획, 관공선운영대책추진 등은 이미 20년이 경과한 내용으로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공개
	인 허 가	원자력 설계 및 공사방법, 원자로 운영변경허가, 교육	공개 부분공개 (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자력 설계 및 공사방법은 인허가 관련 기록으로 생산된 지 10년이 경과한 기록물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교육과학기술부(구 과학기술부)	인허가	용원자로 허가, 핵연료 처리사업, 핵물질 사용허가		<p>관한 사항으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공개하나, 허가신청서 안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외하고 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로 운영변경허가는 원자력 인허가 관련 기록으로 생산된 지 10년이 경과한 기록물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공개하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 신고서 내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식별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공개 • 교육용원자로 허가는 연구용 및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 허가 관련 문서로 생산된 지 10년이 경과한 내용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신청서 안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외하고 공개 • 핵연료 처리사업, 핵물질 사용허가는 「원자력법」에 따라 허가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으로 생산된 지 10년이 경과한 내용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신청서 및 반입반출보고서 내의 개인정보(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등)를 제외하고 공개
	기 타	안정성대책 연구 철, TMI후속조치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79년 미국 TMI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소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시설면, 인력운영면 등)가 취해지고, 미결 사항에 대해 원자력발전소별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내용으로 공개
외 교 통 상 부	국 제 협 력	한미협정, 한호협정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미협정은 원자력 민간이용에 관한 협정기록이며, 한호협정은 한국과 호주간의 핵안전 조치 협정기록으로 1979년 생산기록으로 공개될 경우 외교문제에서 국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공개
	외 교	SOFA · 한미합동 위원회회의록	비공개 (1호, 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교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2호 및 「한미합동위원회 운영절차규칙」, 「한미합동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절차규칙」에 의하여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한미합동위원회 운영절차규칙」에 의하여 한·미 양측의 합의 없이는 의사록 공개 내지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 제2호에 의하여 비공개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외교 통상부	외교·국방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록	부분공개(2호) 비공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정전위원회 기록물은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의결 사항(외교통상부의 30년경과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시, 1976년 이후 생산기록물을 비공개로 유예 의결)에 따라, 외교와 관련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해 공개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 군사정전위원회본회의내용요약철은 본회의 및 비서장회의 회의록이 공개된 1971~75년까지의 기록은 공개
	기타	중정의견문의회보철, 공심보류철, 공심서류	비공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관련 문서로 생산기관인 외교통상부의 부령에 의하여 30년 미경과한 기록물은 비공개
		월남전포로 및 실종자송환	부분공개(6호) 비공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남전포로 및 실종자에 대한 기록으로 1969년에서 1982년도까지의 국방부와 외교부 기록으로 30년이 경과한 1978년까지는 공개하도록 하고, 30년이 미경과한 기록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에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비공개. 다만, 30년이 경과한 기록물 중 군번, 이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공개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법무부	행정	수용자신분장	부분공개 (4호, 6호) 비공개 (4호, 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이 개인 범죄, 수형자의 신분, 교도·교화·심사와 관련된 기록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형의 집행 및 교정관련 직무의 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시국/공안법 관련 수용자신분장은 개인 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는 정보에 한하여 공개
		형집행관련철, 가출소 보호사안원부, 피보호감호자명단, 보호감호집행원부, 치료감호결정서철, 형집행정지명부, 집행면제결정서철, 집행면제보호사안원부, 피보호처분자관리대장, 치료감호보호사안원부, 가출소 결정서철, 만기력부, 군수형자 입출소 현황, 가석방자명부, 형집행정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집행 관련철은 성명, 국적, 한국내 주소, 직업, 처벌일자, 처벌구분 등의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며, 용의사실인지보고서에는 어떤 경로로 범법외국인을 인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기술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보수집 기법 등 정보수집 경로와 방법이 노출되어 비공개 가출소 보호사안원부, 피보호감호자명단, 보호감호집행원부, 치료감호결정서철, 형집행정지명부, 집행면제결정서철, 집행면제보호사안원부, 피보호처분자관리대장, 치료감호보호사안원부, 가출소 결정서철, 만기력부,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법 무 부	행 형	지자명부, 사형확 정인명부		<p>군수형자 입출소 현황은 본적, 주소, 직업, 주민등록번호, 이름, 죄명, 형명·형기, 범죄 개요, 출소일자 등으로 구성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석방자명부는 가석방자 성명, 연령, 주소, 죄명, 형명/형기, 형기 종료일, 출소년월일(허가년월일), 범수(초범, 2, 3범 등) 등이 기재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로 공개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형집행정지자명부는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개인별 기록(성명, 연령, 주소, 죄명, 형명/형기)이 대부분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로 공개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사형확정인명부는 판결확정일, 항소기각확정일, 상고기각확정일, 언도연월일, 수감번호,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로 공개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사 면 ·	사면·감형·복권 관련철	부분공개(6호) 비공개(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면·복권·감형 기록은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관한 고도의 의사결정과정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법무부	감형·복권			<p>에 준하는 내용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비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면통지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 사면통지서는 이미 확정된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통계	보호관찰통계, 군수형자수감통계 보고	공개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관찰통계는 특정 개인정보가 없고 통계수치 등인 경우에는 공개로 재분류하고, 보호관찰대상자 명단, 소재불명 가출소자 명단 등이 첨부되어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 • 군수형자수감통계보고철은 연도별, 분기별 수감자, 출감자수 현황으로 개인정보는 없고 단순 수치 통계이므로 공개
	공안·보안	안전관리대상자 보고철, 좌익수출소통보, 좌익수조사보고서, 보안관찰처분사안부, 좌익수형자명부	비공개 (2호, 3호, 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대상자 보고철은 수용중인 미전향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기록으로 동향 보고서에는 접견, 서신여부, 건강상태, 수용규칙 준수 여부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대법원 판례에서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 등도 북한의 대남전략에 있어 매우 유용한 자료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며 해당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2호에 의거,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법무부	공안·보안			<p>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판례가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다수이므로 비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익수출소통보는 보안처분대상자신고서, 좌익수형자 및 요시찰인 석방통보, 보안처분대상자 출소통보, 보안처분대상자 정기/수시 보고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적, 주소, 성명, 죄명, 형명, 형기, 전향여부, 범죄개요 등이 기재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 좌익수조사보고서철은 월별 좌익수에 대한 보고서로 입출소별, 출신도별, 연령 및 성별, 형기별, 죄명별, 선고법원별, 출소예정 연도별, 죄질별, 학력별, 전향실적, 출소(석방)형기별, 전향실적, 미전향수 형기별 입소 등의 현황으로 구성되어 해당정보는 대법원 판례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2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로 공개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보안관찰처분사안부는 피청구자의 인적사항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법무부	공안·보안			<p>(본적,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성명, 생년월일), 원처분내용(보호관찰, 주거제한, 보호감호), 기간갱신청구, 조사자의견, 심의위원회 의결, 결정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로 공개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익수형자명부는 성명, 죄명, 형명·형기, 급별, 직급, 직업, 학력, 당적, 종교, 생년월일, 전향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로 공개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국적관리	국적관계철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원조회,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재산증명서, 재학증명서, 보호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과세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출입국관리	출입국관련철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생년월일, 재입국허가일, 만료일, 허가번호, 본국 주소, 한국내 주소, 여권번호, 직장명, 직위 등이 기재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 비공개 대상정보로 공개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되므로 비공개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검찰청	기 타	묘적 및 합장부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연월일, 가매장연월일, 성명, 사망 당시 연령, 묘지번호, 사망원인, 합장연월일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첨부서류들에도 사망자 뿐 아니라 유족의 개인신상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공개
	행 형	판결문, 약식명령문, 결정문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판서는 피고인, 피해자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적 등)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명예훼손, 피고인의 개인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사 건 부 및 색 인 부	형사사건부, 상고사건부, 상소결과부, 비약적상고사건부, 비상상고사건부, (불기소처분)항고사건부, 항소사건부, 재심사건부, 재정신청사건부, 검사인지사건부, 공조사건부, 내사사건부, 진정사건부, 진정내사사건부, 고소고발사건부, 피의자색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사사건부, 상고사건부, 상소결과부, 비약적상고사건부, 비상상고사건부, (불기소처분)항고사건부, 항소사건부, 재심사건부, 재정신청사건부, 검사인지사건부, 공조사건부, 내사사건부, 진정사건부, 진정내사사건부, 고소고발사건부 등은 피의자가 형사사건으로 공소되거나, 진정이 들어오거나 검사가 인지하여 사건을 수사하거나, 재판결과에 불복하여 불복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물로, 피의자(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죄명, 처분 결과 등의 내용이 공통으로 기재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검찰청	사건부 및 색인부	인부, 피고인색인부, 민사사건색인부, 형사(사건)색인부, 항소사건 색인부, 항고사건 색인부, 행정소송 색인부, 색인부, 담당사건수리부, 검사사건부, 형사사건기록보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의자색인부, 피고인색인부, 민사사건색인부, 형사(사건)색인부, 항소사건 색인부, 항고사건 색인부, 행정소송 색인부, 색인부는 검찰청에서 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피고인)색인부로 이름순으로 기재되었으며,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신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 담당사건수리부, 검사사건부는 검사가 수사를 담당하는 사건을 기재하여 관리하는 기록으로 접수일자, 사건번호, 성명(피의자, 피내사자, 피진정인), 죄명, 사경지휘(일자, 관서, 송치일), 검사처분(일자, 내용) 등이 기재된 기록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 형사사건기록보존부는 검찰보존사무규칙에 의하여 사건기록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작성된 기록으로 연도별, 사건번호 순으로 기재하고 피의자(피고인) 이름, 죄명, 종결사항, 종결연월일, 보존질번호, 재판원본편철번호, 보존기간, 보존종료연도, 재기사건의 상호 관련 사건번호와 합철보존의 경우 상호 관련 사건번호 등 참고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검찰청	수사 기록	내사·진정사건, 공무원범죄, 선거사범, 정보 및 공안사건, 행형사건	비공개 (4호, 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사·진정사건, 공무원범죄, 선거사범, 정보 및 공안사건, 행형사건 등 수사기록은 기록물 전체에 개인식별정보 및 범죄정보, 수사관련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훼손,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수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4호,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송무·집행	공소심의의결서, 공소심의위원회회의록, 공소장, 기소 중지자명부, 소재 수사, 소재수사지휘부, 참고인소재 수사지휘부, 지명수배원부, 지명수배해제원부, 상소 결과부, 항소상소 결과부, 사건수리 통지서철, 구속영장청구부, 구속적부심사, 구속적부심사관계철, 보석자명부, 보석불허	부분공개(6호)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소심의의결서, 공소심의위원회회의록은 주로 무죄, 치료보호, 청구기각, 공소기각, 면소판결에 대하여 상소 여부를 심의하는 기록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검사의견이나, 상소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회의 발언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공소장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문서로, 피고인에 대한 개인식별정보(성명, 직업, 주민등록번호, 나이, 주거지, 본적 등)와 죄명, 공소사실, 의견 등 개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 기록 전체에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는 공소제기 사실을 확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검찰청	송무·집행	기타각종결정서철		<p>인하는 기록으로 형제번호, 피고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그 외 비공개대상 정보가 없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의 개인정보만 제외하고 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소중지자명부, 소재수사, 소재수사지휘부, 참고인소재수사지휘부 등은 피의자 및 참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수사가 중지된 기록으로 기소중지자에 대한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연령, 직업, 주거, 가족사항, 신원보증인 등)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소재수사 기록은 소재불명인 피의자, 참고인에 대한 개인정보(주거, 직업, 연령, 본적, 주민등록번호 등)가 다수 포함되고 개인신상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 지명수배원부, 지명수배해제원부 등은 소재불명으로 수사가 중단된 경우에 지명수배하는 기록으로 개인에 대한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 상소결과부, 항소상소결과부는 피의자(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죄명, 처분 결과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검찰청	송무·집행			<p>를」제9조제1항제6호의 의하여 비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수리통지서철 등은 형사사건, 항소사건, 항고사건 등을 수리한 후에 통지한 문서로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죄명, 사건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 정식재판청구부, 정식재판청구서철은 약식명령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기록으로 사건번호, 피고인의 인적사항, 죄명, 약식명령주문 등이 기재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 구속영장청구부, 구속적부심사, 구속적부심사관계철 등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검사가 구속하기 위하여 영장청구를 하는 기록과 구속영장으로 구속된 피의자 등이 관할법원에 구속 적부심사를 요청한 기록으로 사건명, 피의자, 생년월일, 직업, 주거지 등의 개인식별 및 신상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 보석자명부, 보석불허기타각종결정서철 등은 법원의 보석허가/불허 결정 기록으로 형제번호, 주임검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죄명 등 개인식별 및 신상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검찰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보안	보안처분 기록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감호, 보안처분(관찰), 치료감호 결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거, 본적, 직업 등) 및 신상정보(해당범죄사실, 행형사항, 전형여부, 출소 후 동향, 가족상황 및 생활환경, 신원보증 관계)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조에 의하여 비공개
	사면·감형·복권	사면·복권·감형 기록, 통지서	부분공개(6호) 비공개(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면·복권·감형 기록은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관한 내용으로 고도의 의사 결정과정에 준하는 내용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비공개 • 사면·복권·감형 통지서는 이미 확정된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개인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수형인명부	수형인명부, 수형인색인부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형인명부, 수형인색인부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의 경우 작성되는 기록으로 이름, 주소, 출생지, 본적,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처형도수, 수형회수 등 행형사항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검찰청				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집행	집행원부, 항소집행원부, 공안집행원부, 형미집행자 기록, 사형집행에 관한문서, 재판집행 촉탁부, 재판집행 촉탁수리통보철, 구속집행정지자 기록, 감호집행정지자 기록, 집행정지자승인철, 보안처분집행원부, 집행유예취소청구부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의 집행관련 기록으로 개인식별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지, 연령 등)와 행형기록(죄명, 형명형기, 출감기록, 집행상황 등) 등이 다수 포함되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보고사무	검찰일지, 장비관리업무일지	공개 부분공개 (4호, 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일지는 운영현황 및 중요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중요행사 및 사건 등이 기재된 기록으로 정·현원 사항, 주요행사 등으로 공개가 가능하나, 일부 건에 기재되어 있는 사건 및 수사에 관한 건은 개인신상 및 검찰 내부 사정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어 수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검찰청				<p>법률」제9조제1항제4호, 제6호에 의하여 이를 제외 후 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비관리업무일지는 일반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1979년~1982년에 생산된 문서로 기밀성이 소멸되어 공개
	통계	통계, 일람표, 사회안전법관련통계철, 공안통계	공개 비공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 및 일람표는 단순 통계 데이터로 공개가 가능하나, 사회안전법관련통계철, 공안통계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들의 전국적 현황과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현황기록으로 대남전략에 유용한 정보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판례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비공개
	보고	대통령·총리 지시사항철, 전국검사장회의철, 검찰사무보고서철, 정보보고철	공개 비공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총리 지시사항철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시사항으로 비공개대상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개 전국검사장회의철, 검찰사무보고서철, 정보보고철 등의 보고 기록물은 수사 관련된 업무보고로 기록물 전체에 수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공개될 경우 수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비공개
	기록	기록송부부, 기록대출부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록관리 기록물은 피의자의 수사 및 재판 기록을 송부·대출·폐기하는 기록으로 피의자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검찰청	관리			인적정보(이름, 형제번호, 사건번호, 죄명 등)가 포함되어 있는 단순 기록물로 개인식별정보 삭제후 부분공개의 실익이 없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해 비공개
	기타	사형확정수재심상황, 보관위탁물점검부, 화해조서, 재감인기소통지부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형확정수재심상황은 사형확정인의 재심상황을 보고받는 내용이고, 보관위탁물점검부는 보관위탁압수물점검부, 화해조서는 민사사건 화해관련 내용이고, 재감인기소통지부는 재감인 기소통지 기록으로 기록물 전체에 피의자의 개인식별정보 및 범죄이력 등이 포함되어 공개될 경우 개인사생활의 비밀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해 비공개
	기타	국가기간통신망통합협정관계철	부분공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신부 주관으로 전파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각 부처와 각 방송사 등에 산재해 있는 기간통신망시설 및 그 운영요원을 통합·운영하는 기록으로 검찰청내 통신시설 및 통신망 구성 등 통신보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통신시설 및 통신망 정보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이를 제외하고 공개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국방부	소 송	배상결정서 원본, 배상결정서철	부분공개(6호)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이 민간인에 입힌 사고에 대한 배상금 신청과 특별배상심의위원회의 배상결정서가 편철된 기록으로 피해자 및 가해자의 개인 식별정보와 피해액수, 지급금액 등의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 배상결정서 원본은 개인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임의변제관계철	부분공개(6호)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임의 변제금(배상금) 지급과 관련된 기록으로 개인 식별정보 및 개인 신상에 관한 기록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 배상결정서, 판결문은 개인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인 사	인사명령	부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양식에 따라 발령일자, 소속, 계급, 군번, 군사특기, 성명, 발령사항이 기재된 문서로 개인 식별정보인 군번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군번을 제외하고 공개
		군무원인사명령원 본철	부분공개(6호)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군 및 직할기관의 군무원 인사발령 기록으로 인사명령서 이외에 사직원서, 군무원 특채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국 방 부	인 사			<p>및 전직시험 합격결정서, 면접시험 채점표, 신원조회 결과, 특채예정자 인적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 면직, 전출 등 일반적인 인사명령은 개인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징 계 상 훈	상별관계, 상별대상, 상별명령, 일반명령(포상), 일반명령(무공훈장관계철)	부분공개(2호, 6호)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계 및 포상 발령서로 징계의 경우 대상자 인적사항, 비위사항, 징계처분결과 기재 • 포상·훈장의 경우는 수훈자에 대한 영예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널리 알릴 필요가 있으나 전시 및 전시에 상응하는 비상사태하의 작전 등 국가기밀정보를 포함한 무공훈(포)장, 보국훈(포)장은 행정안전부의 관련기록물 비공개 사례에 따라 동일하게 비공개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징계명령은 비공개하고 포상명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2호, 제6호에 의하여 군번, 무공훈장, 보국훈장을 제외하고 공개
	대통령표창내용 (을지무공훈장대상)		비공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약기에 전시 및 전시에 상응하는 비상사태하의 작전 등 국가기밀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의 관련기록물 비공개 사례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2호에 의거 비공개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국방부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대장, 대한민국 훈장기장 대장, 외국훈장패용 허가자명부	부분공개 (2호, 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훈자에 대한 자긍심과 영예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공적내용을 널리 알리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 및 제2호에 의하여 개인 식별 정보인 군번과, 국가기밀정보가 포함된 무공훈(포)장, 보국훈(포)장을 제외하고 공개
	국유재산	교환, 국유재산관계철, 국공유재산, 국유재산 매각승인, 국유재산 대부, 매도증서 및 위임장, 공탁서철, 기부채납, 육조창 수용, 양여관계철, 양여잡철, 처분잡철, 환매, 토지수용 등	비공개 (2호, 3호, 6호, 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유 토지, 시설 등 국유재산 교환, 매각, 양여, 기부, 환매 하는 과정에서 편입된 개인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 소유권이전, 토지수용 결정, 기부 양여 합의서, 진정서 접수 및 처리 등 개인의 재산 및 신분관련 기록 포함 부대 및 기지 이전 등 군사기밀, 국방투자사업 관련 기록들과 택지개발계획, 도로포장계획 등 개발 관련 기록 포함 국민의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개인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국가안전보장, 국방통일외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제6호, 제2호, 제8호에 의거 비공개
	정책	국방기본시책, 중	비공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도별 국방기본정책, 전시국방계획 지침 문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국 방 부	정 책	기국방기본정책, 국방정책/발전방향, 전시국방계획지침		서로 목표, 기본정책, 기본방침 및 지침 등이 수록되어 있어, 국방,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비공개
		국방정비정책추진(창정비)	비공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정비창 활성화 대책반 운영계획, 창정비 지원시설 등이 수록되어 있어 국방 군사시설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비공개
	군 사 시 설	발행대장정정철	비공개(2호, 3호, 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발 매수재산 증권매수 결정 취소에 따라 매매계약서 발행대장 정정조치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으로 재산 징발, 매수 취소, 소유권 등기 말소 등과 관련하여 개인 식별정보 및 개인과 군의 재산 관련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 3호, 2호에 의하여 비공개
		PKO 관련철, 군용중차량 통과, 재해대책지원업무, 국책사업지원, 군공창민영화관계철, 군 유해환경 실태조사 자료 등	비공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 군사시설, 장비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비공개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국 방 부	사 면 · 감 형 · 복 권	사면감형복권관계 철	비공개 (5호, 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면·복권·감형 기록은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관한 내용으로 고도의 의사 결정과정에 준하는 내용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사면대상자 인적사항, 범죄내용, 형사판결문 등 개인 식별정보 및 개인 범죄관련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사 형 관 계	사형관계철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형확정 범죄자에 대한 사형집행보고서, 유언장, 구신서 등 형 집행 과정에서 생산된 개인 범죄 및 개인 신상관련 기록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의 무 기 록	사체해부감정결과 통보, 원호보고서 철, 의무조사보고 서철, 전사망보고 서철 등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자 및 부상자 인적사항, 사체해부기록, 진단세부기록서, 병인증서, 사망진단서 등 개인 식별정보 및 개인 건강상 신상에 관한 정보가 대부분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전 비 품 검 사	전비품 손망실사건 검사위심의 결과, 전비품검사심의철, 변상판정철, 수뢰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비품손망실사건 당사자에 대한 심의 의결 결과와 조치사항, 시정명령서, 횡령사건 판정 내용, 변상명령서, 불입 영수증, 국고금 횡령 및 유용에 대한 징계의결서, 처리내역 보고,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국 방 부		및 횡령사건 처리 내역보고		조치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예비군 관련	편성관계철, 예비역 장교양성철, 전력정비계획, 중대장 임용, 동원중대 통합관계철, 역점사업진도, 예비군 자원 전산화, 예비역 장교양성철 등	비공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토예비군, 직장예비군 편성, 예비군 하부지휘체계, 전력정비, 민원 질의 답변, 자원 전산화, 예비군 인사관리 지침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국방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비공개
		전공사상자명부 및 발급대장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공사상자 성명, 생년월일, 본적/주소, 군번 등 개인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기타	배상결정사건부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 피해자, 가해자 인적사항과 사고내용, 배상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정책연구과제, 국방시설정책, 국방정책 연구과제 등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정책 연구과제 제출과 관련된 기록으로 공개
		발전사 편찬자료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전사 편찬계획과 자료 통보로 구성된 일반 행정문서로 공개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병무청	소송	행정심판, 행정소송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과 관련된 내용으로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 청구, 소집면제 취소에 대한 취소 청구, 현역복무기간단축 청구 등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훼손 및 사생활의 자유 또는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병역	병역/소집 면제자 명부, 강제송환자 처리철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소집 면제자 명부는 기록물 전체에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학력, 직군, 주소, 병역사항, 주소, 본적, 세대주 및 관계, 신상 이동 사항 등 개인식별정보 및 병역 등 개인 신상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자유 또는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 강제송환자처리철은 출입국관리소에서 병무청으로 보낸 공문으로 강제송환자 명부, 병역의무자 명부 등 개인식별정보 및 병역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자유 또는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민원	법령해석 질의응답철	부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법 관련 질의응답 기록으로 민원철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개인식별정보(이름, 주소, 본적, 주민등록번호 등)를 「공공기관의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병무청	민원			<p>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제외 후 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의서, 탄원서, 판결문, 사건기록 등 첨부기록물은 내용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이를 제외하고 공개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	차관회의	차관회의록	공개 비공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법령안 의결, 을지연습 계획안은 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비공개로 유지하고 이외의 기록은 비공개 사유가 없으므로 공개
	토지	지적일반철	공개 부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일반철은 ‘토지경계및면적변경철’, ‘주민등록번호등재정리철’, ‘예규철’ 로 구성 • ‘토지경계및면적변경철’ 은 비공개 사유가 없으므로 공개. ‘주민등록번호등재정리철’, ‘예규철’ 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개인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행정안전부(구)	토지	외국인토지취득 허가철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물 전체에 신상 및 재산관련 기록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기타	대성동 종합개발 마을배치도,	공개 비공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파주군의 대성동 마을은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지역이고, 아직 30년이 미경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내무부		대성동 사업관계법규 (정전협정)		<p>과한 기록으로 국방·통일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택평면도를 제외한 마을배치 계획도, 대성동 종합개발사업 계획평면도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비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성동 사업관계법규(정전협정)철은 이미 공개된 1953년 ‘정전협정문’ 및 1963년 ‘군사정전위원회에서 합의되었던 사항’으로 보안상의 기밀성이 소멸되어 공개
	(구비상기획안전부 행정안전부 기획위원회)	을지훈련 대통령재가문서철	비공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무훈련 주관부서를 국방부에서 비상기획위원회로 조정하는 대통령재가문서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비공개
경찰청	인사	신분상실철, 전공사상심사철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공무원 등의 직위해제, 전공사상 심사관련 기록은 전반적으로 대상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경위조사서,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가해자 인적정보 등 개인신상정보 및 개인프라이버시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경찰행정	대통령지시사항, 치안일지·치안대장,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지시사항은 내부관리에 관한 지시사항이나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의 수행에 현저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경찰청	경찰행정	경찰기본대장, 비밀영수철대장, 과태료, 관인대장·경비기념장 수여대장	부분공개 (4호, 6호) 비공개 (3호, 4호, 6호)	<p>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공개, 다만, 사건수사 및 보안 등 내부 고유 업무추진에 밀접하게 관련된 지시사항에 따른 추진 계획서는 그 내용 중「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어지는 정보가 있을 시 사안별로 제외하고 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안일지, 치안대장은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4호, 제6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공개 • 경찰기본대장은 기록물전체에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범죄의 예방 및 직무수행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 비밀영수철대장은 비밀송증을 편철한 것으로,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고 건명에도 비밀내용이 없다고 판단되어 공개 • 과태료는 풍속업소 위반업소에 대한 청문통지 및 결과, 과태료 징수를 보고한 기록으로 개인신상정보 및 개인프라이버시 정보가 다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경찰청				<p>수 포함되어 있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인대장, 경비기념장 수여대장 등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개인 식별정보(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
	소송·행정심판	행정소송, 행정심판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자와 사건 관련인은 물론 각종 사건 관련 첨부서류에 개인정보 및 사생활정보가 대부분 기재되어 있으며, 행정소송·심판의 내용이 뇌물수수, 서류위조, 교통사고, 소유권이 전등기, 면허취소 등의 개인적인 사건들로 이 내용 자체의 공개로 공익에 기여하기 보다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크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개인	학적부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록물 전체에 개인신상 및 활동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인허가	전당포, 고물상, 용역경비업, 풍속업소의 영업허가 대장, 영업 신고, 총포, 화약류의 관리대장, 소지허가대장	비공개(3호, 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의 신상정보, 위험물 취급에 관한 정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경찰청	수사	내사종결철, 내사 사건기록, 사건 종결철, 수사이의사 건철, 미제사건철, 즉결사건철	비공개 (4호, 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 및 범죄수사에 관한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범죄의 예방, 수사 등 공개될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직무수행 등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건 피해자, 피의자, 제3자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정보·보안	공안사건관련 수사 기록, 대공관련 수사기록	비공개 (2호, 3호, 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보안 기록은 ‘분단’의 특수한 상황과 사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개인 신상정보 및 사생활 관련정보가 정보가 대부분인 기록으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고, 또한 사건 발생 후 3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관련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익에 기여하기 보다는 업무진행 과정 등의 노출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치거나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2호, 3호,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외사	외사관찰대상자, 외사신원조사, 중요외사사범	비공개 (2호, 3호, 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사기록은 외사 관찰대상자의 동향파악을 위한 개인정보와 개인의 사상과 동향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30년이 미경과한 기록으로 관련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익에 기여하기 보다는 업무진행 과정 등의 노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경찰청	외사			출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국민의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관리	발굴조사, 전천왕사지금성산와적기단 건물지, 문화재조사, 함평신덕고분조사, 여천우두리고인돌조사	부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 발굴조사 기록은 공개하되, 기록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발굴조사 참여인력 등 개인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공개
	문화행사	청소년문화강좌, 전통예술실기대회	부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문화강좌, 전통예술실기대회 등 문화행사 기록은 공개가 가능하나, 기록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강사비 및 심사비 수령 영수증 등은 금액,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이를 제외하고 공개
	문화시설	중앙박물관이전계획, 미술관건립관계철, 지방문화시설건립지원	부분공개(1호, 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박물관이전계획, 미술관건립관계철, 지방문화시설건립지원 등 문화시설 기록은 공개가 가능하나, 기록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식별 및 신상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공개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문화체육관광부	기타	불온간행물열람대장, 영정, 동상 심의위원회, 도서관진흥법 개정	공개 부분공개 (5호, 6호) 비공개 (6호, 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민원서류(진정서, 건의서 등)은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보를 보호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온간행물열람대장은 공개될 경우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 영정, 동상 심의위원회는 영정 동상 관련 심의회로 공개가 가능하나, 회의록 안의 이름은 공개될 경우 향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 제6호에 의하여 발언위원명을 제외하고 공개하고, 이력서, 계약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 제7호에 의하여 비공개 • 도서관진흥법개정은 도서관진흥법 개정 관련된 의견조회 및 회신 기록으로 공개
문화재청	문화재관리	매장문화재발굴	공개 부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문화재, 매장문화재발굴 기록은 토지·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문화재를 발견할 때 신고하고 발굴하는 기록으로, 신고서 안에 신고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발굴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는 「공공기관의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문화재청	문화재관리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공개, 일반 행정문서는 공개
		무형문화재, 전수조교, 전수장학생, 전수회관	공개 부분공개(6호)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수조교 및 장학생 선정과 관련된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은 특정개인에 대하여 심의하는 내용으로 개인 식별정보를 제외하더라도 개인이 보호되지 않는 내용으로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하고, 이력서, 주민등록표 등과 같은 개인 신상 첨부자료들도 비공개, 다만 일반 행정문서는 공개 전수조교 및 장학생 명단은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 후보자 명단은 비공개
		증·개축, 문화재 현상변경	공개 부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개축, 문화재 현상변경 등 보수정비 기록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발굴 인원 등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는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노출의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제외 후 공개, 다만 일반 행정문서는 공개
		문화재지정 (국보·보물)	공개 부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보, 보물 등 문화재지정에 관한 기록으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개인신상정보(주민등록표 등)는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노출의 우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문화재청	문화재관리			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삭제후 부분공개, 다만 일반 행정문서는 공개
		압수문화재, 압수문화재대장	공개 부분공개(6호)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수문화재기록은 압수문화재 보상청구인의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적, 주소)와 개인신상기록(주민등록초본), 피의자의 사건송치서, 공소장, 기소중지의견서 등 범죄 경력 정보 등은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훼손 및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하고, 개인정보가 미포함된 문화재관리 기록과 일반 행정문서는 공개 • 압수문화재대장은 구좌명(피의자 성명)과 현상변경 및 이동상황(연월일)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식별정보(성명, 상호명)는 공개될 경우 개인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제외 후 공개
	인허가	해외전시, 문화재반입반출	공개 부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반입반출기록은 해외전시 등의 이유로 문화재의 반출허가를 득하는 기록으로 신고서 안에 신청인, 반출담당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이를 제외하고 공개, 일반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문화재청				행정문서는 공개
	기타	문화재 기증, 세계유산, 문화재구입, 해외학술회의	공개 부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 기증, 세계유산, 문화재구입, 해외학술회의 기록은 기증자 및 해외출장 공무원 등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식별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이를 제외하고 공개 문화협정은 생산된 지 29년이 경과한 기록으로 외교상의 민감성은 소멸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는 무리가 있으므로 공개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관리	농지전용협의, 등기관계철	부분공개(6호) 비공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전용협이는 군사시설 및 도로공사, 토지이용기본계획 수립시 절대농지 전용에 대한 부처간 협의 기록으로 군사시설의 경우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비공개 부처간 협의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주민의견서, 건의서 등을 제외하고 공개 등기관계철은 국유재산 등기를 정리하는 기록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농지분배자의 개인정보(이름, 주소 등)를 제외하고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약품목고시(신청 및 직권시험), 농약품목고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농촌진흥청	인허가	농약품목고시(신청 및 직권시험), 농약 품목고시 분석결과	공개	시 분석결과는 농약품목고시를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내용으로 생산된 지 10년이 경과한 기록으로 영업상의 기밀성이 소멸되어 비공개 대상정보가 없으므로 공개
	기타	국외유전자원 저장, 생물다양성 협약	부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유전자원 저장, 생물다양성 협약은 유전자원 저장목록과 다양성 협약 기록으로 비공개 대상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공개하되, 철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지품목 반입신청서 및 공무국외여행 신청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후 공개
산림청	인허가	해외산림개발	공개 부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산림개발 신고서 안의 개인신상정보(이력서,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는 공개될 경우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제외하고 공개 • 개발계획내용, 사업진출 계획서 등은 생산된 지 10년이 경과한 내용으로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유는 대부분 소멸되어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공개
	국제협력	한국·중국(1993년), 한국·인도네시아(1994년)	공개 부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중국(1993년), 한국·인도네시아(1994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가 없으므로 공개, 다만 대표자에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대한 이력서 중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는 제외하고 공개
지식경제부 (구 정보통신부)	인사	주재집배, 대무사역관계철, 우편집배위탁계약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재집배, 대무사역관계철, 우편집배위탁계약은 인력 고용, 주재집배 및 위탁 계약으로 임용 기록으로 간주하여 개인식별정보 및 신상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인허가	별정우체국재지정, 별정우체국재폐지	부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을 설치·운영하는 기록물로, 지정신청, 지정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등의 인허가 기록 생산된 지 10년이 경과한 내용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공개하되,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식별정보 및 개인신상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공개
	국유재산	고정자산관리대장	비공개(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서 고정자산의 취득, 이관, 대차 및 처분 등의 사항을 기재하는 대장으로 기록물공개심의회에서 기의결된 국유재산대장과 동일한 기준 적용 고정자산관리대장은 관리하고 있는 자산의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지식경제부 (구 산업자원부)				실태(유형, 수량, 금액 등)를 보여주는 기록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비공개
	감사	감사결과처분요구,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비공개(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회, 조합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사 기록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단체의 경영에 관한 내용으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비공개
	소송	행정소송	비공개(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규제 요청 및 제한 요청 등 대외무역정책과 관련된 행정심판 기록으로 대외무역정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 행정심판 답변서 및 보정서는 수출입 품목과 관련하여 해당 산업협의회에서 건의를 받고 검토한 기록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비공개
	인허가	석유개발공사 설립철, 법인설립허가 (구서시장변영회), 염제조허가대상,	부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개발공사 설립철, 법인설립허가(구서시장변영회), 염제조허가대상, 재제염 허가신고서철(경기도), 한국전자통신(연) 설립계획자료 등은 생산된 지 10년이 경과한 내용으로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지식경제부 (구 산업자원부)		재제염 허가신고서 철(경기도), 한국전 자통신(연) 설립계 획자료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 므로 공개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주민등록번 호 등의 개인 식별정보, 개인 신상기록을 제 외하고 공개
	심사	외자사업심사위원회	비공개(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자사업에 대한 심사위원회 기록으로, 외국 인증액투자사업종합심사표 등 회사 영업에 대한 정보가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한 법률」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비공개
	법령· 예규	대외무역규정, 수출입공고 개정	공개 비공개(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입 품목과 관련하여 해당 산업협의회에 서 건의를 받고 검토한 기록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 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제7호에 의하여 비공개, 개정된 규정은 공개
	석유 개발 발	운영협약서, 1980년 7소구 시추 최종보고철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0년~1982년에 생산된 국내 대륙붕 개발 과 관련된 운영협약서와 보고서로, 생산된 지 25년 이상 경과한 기록으로 보안상의 민감성 이 감소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 할 우려가 있지 않으므로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형항공기 개발사업 기록은 1994년 한중 주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지식경제부 (구 산업자원부)	항공기 개발	중형항공기 개발 사업(제1차년도 사업 협약 관련), 중형항공기 관련, 중형항공기 개발사업 조합철, 한중협상 관련	부분공개 (6호, 7호) 비공개(2호)	<p>요산업협력 체결 및 한중 중형기 공동개발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진행된 한중 중형항공기 개발 및 협력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비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부된 증빙서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7호, 제6호에 의하여 법인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서류(카드매출 전표 및 영수증)와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국제협약	헝가리 상호무역 협력협정	부분공개 (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구권 최초로 수교한 헝가리와 무역 협력 협정서를 체결하는 기록으로 공개하되, 해외공무출장허가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
	기타	조선산업 합리화계획 보완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우조선 경영 현황(조선전망, 영업 및 생산 실적, 관리혁신, 자구노력 추진실적 및 계획, 재무현황), 대우빌딩 매각 계획, 조세지원요청사항이나 1990년 대우빌딩 매각을 통한 재무 현황 개선 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으로 경영·영업상의 기밀성 및 민감성이 적고, 이미 알려진 사항으로 공개
	특허심판	판결문, 심결문	부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결문, 심결문은 특허심판원(구심판소, 구항소심판소)에서 산업재산권 분쟁해결을 위한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특허청				심판기록으로 이름, 읍면동이하의 주소를 제외하고 공개
	기타	(특허행정정보화) 장기계획철	공개 부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청이 1992년~1998년에 수행한 제1차 특허행정정보화 사업 관련 기록물로, 특허행정정보화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이미 유사한 기록이 공개되고 있고, 용역수행을 위하여 제출된 사업제안서도 거의 20년이 경과한 기록물로 IT분야의 급격한 기술발전과 비교하여 영업상 기밀성이 감소되어 공개하되, 공청회 참석자명부는 참석자 이름, 서명 등이 기재되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이를 제외하고 공개
보건복지가족부	진료	정신감정서철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료감호자에 대한 정신감정서로 기록물 전체에 개인의 병력 및 치료에 관한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노동부	노동사건	사건조사철(해고), 노동쟁의 사건조사철, 중재재심 사건조사철, 부당해고, 노동사건, 중재재심, 재심신청사건, 구제재심신청,	공개 부분공개(6호)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사건관계사건철, 중앙노동위원회 사건처리결과 통보서, 결의서, 중재재심결정서, 중재위원회 회의록, 노동쟁의 발생 신고서, 단체협약서, 부당노동행위 선동 증빙자료, 진술서, 의견서, 이력서, 근로계약서, 진정서 등이 포함된 기록으로 개인 식별정보와 노동사건 처리를 위한 각종 개인 신상기록이 포함되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노동부	노동사건	재심사청구철		<p>어 있으며 개인의 명예와 깊은 관련이 있는 범죄 관련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정문, 재심판정서, 재결서, 결의서, 판결문은 개인 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일반 행정문서는 공개
		사건송치대장, 송치사건부, 사건송치부, 송치관계철	공개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건 조사 후 해당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기 위한 기록으로 피의자 성명, 주소, 직업, 연령, 죄명 등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범죄관련 기록으로 개인의 명예훼손 및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이러한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일반 행정문서는 공개
		범죄사건부, 범죄사건처리부, 범죄접수부, 범죄접수 및 처리부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죄명, 피의자 및 피해자 성명, 피해정도, 석방연월일, 송치, 판결 등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개인	훈련교사관계철, 직업훈련교사면허 발급철 등	공개 부분공개(6호)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허신청과 관련된 개인 신상에 관한 기록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등의 개인 식별정보와 이력서, 경력증명서, 신원증명서 등 개인 신상기록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노동부	개인			<p>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발급 대장 등 대장형태의 기록은 개인 신상에 관한 첨부서류가 없으므로, 공증과 자격에 대한 내용으로 이름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 비공개 대상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일반 행정문서는 공개
		건강관리수첩 신청서철,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장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폐 근로자 개인의 진폐 경력과 개인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진폐관리구분관계철, 진폐관리구분판정철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에 대한 진폐여부 개별 판정결과와 병력 등 개인 신상관련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파독광부 적립금대상자명단, 파독광부 사후관리, 파독광부 적립금, 사망광부 유족보상, 유족보상, 파독사망간호원 등	공개 부분공개(6호)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독광부 사망 후 보상과 관련된 기록으로 사망자 및 유족의 개인 정보, 보상금 청구를 위한 각종 증빙서류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 파독광부 적립금철은 적립금 사용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회의록이 포함되어 있어 회의록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노동부	개인			(발언록)과 회의참석자 명단을 제외하고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공개 대상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일반 행정 문서는 공개
		공인노무사자격증 교부철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인노무사 자격증서 교부신청서, 이력서, 신원증명서 등 증빙서류 포함 자격증 신청과 관련된 개인 신상에 관한 기록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의무검정합격자 명단	부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외적으로 공포된 자격사항으로 개인 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본적/주소, 비고)를 제외하고 공개
	인허가	직업소개 허가, 직업안내소 허가 갱신, 근로자 공급사업허가철, 법인설립허가관계, 서울항운노조공급허가관계	공개 부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소개사업 허가 및 변경,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 사단법인 설립, 허가와 관련하여 사업체 대표자의 개인 식별정보 및 개인 신상에 관한 서류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이를 제외하고 공개 비공개 대상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일반 행정 문서는 공개
		국외개별취업허가 관계철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외취업 허가 신청 및 통보 기록으로 허가신청서,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와 신청자의 인적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여성부	행정심판	행정심판	공개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매매여성의 강제수용보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으로, 일반적인 행정처분 및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과 달리 '성관련 사건'은 보호해주어야 할 기록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하고, 일반 행정문서 등은 공개
	기타	일군위안부 기록	부분공개(6호) 비공개 (2호, 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가 위안부로 시/군/구에 신고하고, 지원대상자로 확정되어 지원받는 기록은 개인의 식별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와 피해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제정과정이나, 일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 대책, 정신대문제 실무대책반 회의기록은 개인식별정보(피해자)를 제외하고 공개 정신대 실무대책회의 중 첨부된 대외비, 비밀 3등급(외교부 1993년 생산)문서들은 대일 교섭대책 등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비공개
국토해양부	토지수용	수용재결서, 이의신청 재결서,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수용재결서,	부분공개(6호) 비공개 (2호, 3호, 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용재결서는 도시계획, 도로, 국방/군사, 주택건설, 산업기지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여부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이 기재된 재결서 정보으로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구 건설교통부)	토지수용	이의재결(이의신청, 이의신청재결), 행정심판, 행정소송)		<p>「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개인정보(이름, 주소 등)를 제외하고 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금액(별지로 첨부된 상세내용 포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의 공개될 경우 국민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비공개 • 재결서 외에 이의신청서 등 첨부서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비공개 •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은 군부대 위치, 면적, 용도(○○기지 시설설치, ○○부대 이전, ○○부대 시설사업) 등 군사시설 현황이 기재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를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비공개
	기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회안건	비공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0년 이후 생산된 토지수용재결과 관련된 안전목록 및 회의록으로 토지수용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과 토지보상금 관련 공익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의 대립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비공개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국토해양부 (구 건설교통부)	을지훈련	을지훈련	비공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4년, 1995년에 시행되었던 을지훈련 기록물로 국가안보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제2호에 의하여 비공개
	기타	우편송달보고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편송달보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고시 및 재결서를 송달하는 보고서로 개인 식별정보(송달자 이름, 주소 등)를 제외하고 공개할 경우 공개의 실익이 없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감정평가법인추천, 감정평가사 제재	공개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정평가법인추천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한국감정평가협회에 평가법인을 추천의뢰하고 회신 받은 공문으로 비공개 대상정보가 없으므로 공개 감정평가사 제재는 평가를 잘못된 감정평가서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국제전화사용부, 보관금, 유가증권, 공보	부분공개(6호)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전화사용부는 개인식별 및 신상정보(수화자, 송화자, 신청자 이름, 통화내용 등)를 제외하고 공개할 경우 공개의 실익이 없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관금, 유가증권은 급여채권가압에 대한 기록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 공보는 공보에 관련된 일반적인 행정문서로 공개가 가능하나, 건안에 포함되어 있는 국민홍보위원의 주소는 공개될 경우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제외 후 공개
국토해양부 (구 해양수산부)	인허가	공유수면 점유허가, 공작물 설치허가, 항만공사 시행공사	부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수면 점유허가, 공작물 설치허가, 항만공사 시행공사는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공유수면에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는 인허가 기록물로, 관보에 고시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식별정보, 인허가 첨부서류 중 이력서, 자격증 사본 등 개인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공개 ※ 관보 고시 : 공유수면 점용 및 공작물 허가 사안 (허가연월일, 허가사항, 허가기간, 허가자의 주소·성명)
		해기사면허증교부대장, 선원수첩 교부대장	부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기사면허증교부대장, 선원수첩 교부대장 등 면허교부 기록은 「선원법」,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원수첩, 해기사 면허를 교부한 대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국 토 해 양 부 (구 해 양 수 산 부)				장으로 공증·자격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하 되, 대장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본적, 전화번호 등은 「공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공개
	행 정 심 판	재결서, 재결서 원본	부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결서, 재결서 원본은 지방해양심판원과 중 양해양심판원에서 해양 사고에 대한 조사와 심판을 하는 재결 기록으로, 기록물공개심의 회에서 기의결된 행정소송, 행정심판과 동일 한 기준을 적용하여, 재결서, 권고서 등의 수 심인, 해난관계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 년월일, 주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제외하 고 공개
국 토 해 양 부 (구 수 로 국)	기 타	항로고시원고	부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로국에서 항고를 고시하는 원고로 공개하 나, 철안에 포함되어 있는 현장대리인의 이력 서 및 자격증 사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제 외하고 공개
(구 항 공 관 리 청) 국 토 해 양 부	인 허 가	무선국허가	비공개 (2호, 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항 무선국 허가, 세관, 경찰, 군 무선국 설 치 및 변경 허가 내용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 및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현저한 지 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2호, 제3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호에 의하여 비공개
국토해양부(구해양수산청)	인허가	도선사면허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선사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및 경력, 면허신청 및 발급, 신원진술서, 개인 도선훈련, 도선실적 평가, 해양사고 등으로 인한 면허취소 등 개인식별정보 및 신상정보가 기록물 전체에 기재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해양경찰청	인사	인원현황표 고충관계철	비공개 (2호, 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현황표는 각 직급별 현원, 정원이 표시된 통계표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비공개 • 고충관계철은 기록물 전체에 개인고충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경비정	함정대장, 선박관리 기록	비공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경찰청의 장비구축 및 관리와 관련한 기록물은 경비정 건조추진에서부터 감리까지의 공사과정을 볼 수 있는 기록물로 공개될 경우 보안사항이 노출되어 중요 시설·건물의 파괴 등으로 국민의 생명·신체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에 의해 비공개
		치안일지	부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사건 및 사고 란에 관내에 일어났던 행사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해양경찰청	기타			및 사고 기록들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훼손 및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한 개인 식별정보 삭제후 공개
	수사	사건종결철, 내사종결철, 구속인명부, 범죄접수부, 즉심사건서류대장, 변사, 실종종결철, 소련 피납 어선, 간첩검거 공작철, 방첩공작관계철	비공개 (4호, 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년이 미경과된 수사·정보관련 기록물로 기록물 전체에 개인의 범죄이력 및 수사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4호,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연금	퇴직자연금카드, 장해연금카드, 장해유족연금카드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청구, 확인 결정 및 확인 심사, 연금카드 기록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급여수령금융기관, 계좌번호, 형벌사항, 직급·호봉(기여금기호), 보수월액, 최종지급변동일자, 퇴직연월일, 퇴직사유, 대부사항, 기본재직기간, 가산기간, 퇴직급여재직기간, 감축기간, 퇴직수당재직기간 등이 기재되어 개인 신상정보 및 개인프라이버시 기록이 대부분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전매청	소송	행정소송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신분에 관한 불복신청으로 기록물 전체에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사건	송치사건완결서철	비공개(4호, 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매규정을 어긴 범칙 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개인의 명예훼손 및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4호,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제4회동계아시아대회조직위원회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97U대회조직위원회	인사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탈락철, 자원봉사자 소양교육/발대식/ 기념공연	공개 부분공개(6호, 7호)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봉사자 기록은 합격한 자원봉사자 기록(자원봉사자신청서, 운영요원 등록카드 발급신청서, 운영요원 인사기록표, 채점표 등)과 불합격한 자원봉사자 기록(자원봉사자신청서)으로 개인식별정보 및 개인신상정보가 기록물 전체에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자원봉사자 소양교육/발대식/기념공연은 자원봉사자 소양교육 및 발대식 행사 계획으로 공개하나, 예산견적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자원봉사자 명부, 참석인사 주소는 제6호에 의하여 제외 후 공개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제 4 회 동 계 아 시 아 대 회 조 직 위 원 회 ,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97 U 대 회 조 직 위 원 회	의 료	처방전, 외래진료기록부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료기록은 기록물공개심의회 기의결기준에 따라, 기록물 전체에 개인 식별정보 및 진료 등 신상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기 타	지출증빙서	비공개(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회조직위원회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지출증빙서로 매출전표, 영수증, 입금증 등 거래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비공개
	청 산	물자처분관계철, 수입결의서, 청산단결산관계철, 청산운영, 어음관계철, '99년도 결산자료	부분공개(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회 종료에 따라 조직위원회를 청산하는 기록으로 결산 및 물자처분에 대한 내용으로 공개하되, 거래처 정보는 공개될 경우 법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삭제 후 공개
	사 업 부	유니폼기본계획, 제작단, 유니폼디자인공모, 유니폼공모및축하 쇼관련, 출연자명단, 계약관계철, 운송 및 보관관리,	비공개 (2호, 6호, 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부 기록은 휘장사업, 개폐식행사 추진, 유니폼사업 등에 관한 내용으로 기록물 전체에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과 개인식별 및 신상정보(주민등록번호, 이력서, 경력서 등)가 기재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 제7호에 의해 비공개 북한휘장사업은 북한을 휘장사업에 참여하도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회장사업추진 일반, 북한회장사업		록 접촉하는 방법 및 계획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비공개
	기타	(1)북한및미수교국 관계,(2)LA대회남북단일팀구성노력(재미교포중심민간단체)	비공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수교국과의 교류 추진지침 시달, 대북한 관계 업무 지침 등으로 대북관련 기록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해 비공개
교육청	개인	생활기록부, 제적대장, 제적부, 졸업대장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기록부는 학적사항(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성별), 본적, 주소, 보호자(성명, 주소, 관계, 직업), 학력, 가족사항((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종교, 학적), 신체발달 사항, 교과발달 사항 등 기록물 전체에 개인 신상 및 활동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 제적대장, 제적부는 제적당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로 기록물 전체에 개인 신상 및 활동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 졸업대장은 연도, 번호, 이름, 생년월일, 본적, 주소, 주민등록번호, 진학사항 등 개인 신상 및 활동에 대한 정보가 기록물 전체에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교육청				기재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인 허가	학교설립인허가, 학원설립허가 등	공개 부분공개(6호) 비공개(3호, 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허가 기록으로 개인 식별정보(신청서안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개인신상정보(이력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원 등)는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제외 후 공개.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성명, 법인 주소, 법인명 및 단체명 등은 공개 • 사업계획서, 교육계획서 등은 생산된 지 10년이 경과한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공개 • 학교 설립관계철 안에 부지매입과 관련한 계약서, 토지대금 지급 등 보상기록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 6호에 의하여 비공개
	기 타	사고처리대장, 취학의무유예	부분공개(6호)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처리대장은 학교(교원, 학생)사고개요 및 처리에 관한 대장형식의 기록물로 직명, 성명, 성별, 구분(민원, 사고), 사고개요, 처리 및 조치결과 등이 기재되어 「공공기관의 정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기 타			<p>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제외 후 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학의무유예는 취학을 유예 신청하고 승인해주는 기록으로 아동성명(한자), 보호자, 생년월일, 유예기간, 사유, 신청일자, 보호자 주소, 보호자 성명, 인후보증인 주소, 성명 등이 개인 식별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국 공 립 대 학 교	회 의	학장회의	비공개 (5호, 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과대학 학장의 학사관리 및 학교 운영에 관한 회의록으로, 30년이 미경과한 기록으로 속기록 수준으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참석자 및 대상자의 개인 식별 정보를 삭제하여도 특정인이 식별될 수 있으며, 자세한 발언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향후 학생 관리 및 학교 운영 등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기 타	집단상담, 대여장학금지급 관계철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 수료증서, 서약서, 대여장학금신청 관련 내용으로 개인식별정보 및 개인신상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토 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집합건물의	공개 부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폐쇄)대장, 임야(폐쇄)대장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급 및 소유자 정보를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지방자치단체	토지	대지권등록부 등		<p>기록하는 지적공부로 현재 시군구 민원실에서 「지적법」에 따라 일반에게 열람 및 등본발급이 가능하므로 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건물의 대지권등록부는 토지의 소재·지번,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명칭, 대지권의 지분비율 및 구분소유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이 등록되어 있는 지적공부로서 현재 시군구 민원실에서 지적법에 따라 일반에게 열람 및 등본발급이 가능하므로 공개 • 지적공부는 소유주를 확인하는 공증 성격의 기록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6호의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되, 일부 토지대장상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공개될 경우에 개인정보유출의 우려가 있으므로, 뒷자리를 제외하고 공개
		토지이동결의서	부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오류 정정 등의 사항이 있을 때,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신청(신고)하고, 해당 관청에서 결의한 기록으로 신청서 안에 신청인의 이름, 본적,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 본적 등을 제외하고 공개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지방자치단체	토지	분배농지소유권 이전 관련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배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분배농지 소유권이전 등기용 위임장 및 상환증서 교부신청, 의견서, 등기신청서, 증서교부신청서, 양도증서, 매각사실증명서 등 관련 기록물들이 첨부되어 있어, 개인의 재산관련 기록으로 공개될 경우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농지원부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 면적이상의 농지를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장에 대하여 주소시의 관청에서 관리하는 기록으로, 현재 일반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이 제한됨 농지소유자 및 임차인 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임차기간 및 주 재배작물 등 개인재산 및 프라이버시 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외국인토지취득허가 및 보유허가, 농지전용허가, 농지조서, 위토대장 및 해제, 토지수용 및 보상, 토지소유권 관계, 국공유재산	공개 비공개 (3호, 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거래관련 기록으로 기록물 전체에 개인 식별정보(토지소유권자/매입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등)와 개인 재산정보(매입/보상가격, 취득일자 등)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개인 신상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제6호에 의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지방자치단체	토지	관리, 경지정리 및 환지관계, 체비지 및 토지거래 허가, 화전대장, 분배농지소유권 관계, 소규모 개간허가, 무허가 건물명의변경, 은닉재산, 기부채납 등		<p>하여 비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의한 보상계획, 제31조(열람)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서(토지수용공고), 매각공고, 경지정리계획, 화전정리계획 등 행정청의 행위와 관련된 행정문서는 공개
		보안림대장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야소재지(군, 면, 리, 지적, 지목), 보안림지정(면적, 목적, 연월일, 기간, 고시번호), 도면번호, 산림소유자(도, 군, 면, 리, 지번, 성명) 등으로 보안림지정/해지 관련내용은 관보에 고시되는 내용으로 공개 <p>※관보고시 : 보안림 지정의 목적 또는 지정해제 사유, 지정 또는 지정해제하려는 보안림예정지 소재지의 지번·지목·면적, 산림소유자의 주소·성명, 지정 또는 지정해제 연월일</p>
	신분	인감관련기록	비공개 (3호, 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인감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에 사용 등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보호, 개인의 사생활 및 자유는 물론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지방자치단체	신분	주민등록관련 기록	공개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명, 본적, 주소,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병역사항, 호주성명, 세대주성명, 동거인 인적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행정문서는 공개
		외국인등록관련 기록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등록표 및 등록대장은 성명, 국적, 연령, 성별, 생년월일, 직업, 한국내 주소 등 개인 식별 및 신상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특종신고서편철장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적 불명자, 무적자에 대한 신고서류 또는 호적기재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신고서류를 편철한 기록으로 혼인신고, 이혼신고, 입양신고, 파양신고 등으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무적자신원조회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적이 없거나, 입적할 호적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분명하더라도 입적신고를 할 수 없는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지방자치단체	신분			무적자(無籍者)에 대한 신원조회 기록으로, 성명, 생년월일, 성별, 본적, 현주소, 보증인 등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호적관련 기록	공개 부분공개(6호)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적 정정 및 조회관련 기록으로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호주 등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 개인정보가 미 포함된 행정 문서는 공개
		건설기술면허대장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물 전체에 성명 및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근무처, 최종학교 등 개인 신상정보 및 식별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인허가	건축허가	비공개 (3호, 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기록으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구조계산서 등 설계도서, 동의서, 면허사본 등 포함되어 있어 국민의 생명·신체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제6호에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의하여 비공개
		건축물대장	부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준공검사 완료 후 등재되며, 건물의 소재·번호·종류·구조·건평, 소유자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건축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개인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각종 인허가	부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합설립인가, 사회복지법인설립인가, 정관 변경인가, 채광계획인가, 공연장설치허가, 공설묘지사용허가, 분묘신고서, 비료생산업허가, 양곡매매업·창고업·장의사영업·사설강습소 허가, 공연자등록, 공장등록 등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인허가 기록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개인 식별정보와 개인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사업계획서 등은 생산 후 10년 이상 경과한 내용으로 공개
	공원묘지허가신청서, 분묘신고서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묘지사용 허가 및 신고와 관련된 개인 신상기록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병무	징병의무자병적원부, 보충역징집순서명부,	비공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역관련 기록물은 성명, 생년월일, 본적, 신체검사 결과, 병역 사항, 입영 여부, 면제에



기관	유형	기록물 내역	재분류 결과	재분류 의견
지방자치단체	병무	소집면제자명부, 징집 및 병역면제자 명부		대한 사유 및 병명 등 개인신상 정보 및 개인 병역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 위 내용은 국가기록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30년 미경과 비공개 기록물에 대한 공개재분류 기준서를 정리한 것으로 기관별·유형별로 수집된 기록물의 수량, 분포에 편차가 크며, 제시된 재분류 결과는 기록물 유형에 따른 대략적 공개기준으로 개별 기록물 철·건의 내용에 따라 상세 공개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힙니다.

PART



공개재분류 점검하기

업무단계별 체크리스트

Ⅲ. 공개재분류 점검하기

업무단계별 체크리스트

번호	체 크 항 목	결 과
1	<p>기록물 생산 및 접수시 건단위로 공개여부를 구분하여 등록·관리하고 있는가?</p> <p>❖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7조(공개여부의 구분관리) 기록물은 건 단위로 공개여부를 구분하고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 등록정보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p>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2	<p>기록물 정리기간에 등록시 부여한 공개여부를 재분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는가?</p> <p>❖ 기록물법시행령 제24조(기록물의 정리)①법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에 생산을 완결한 기록물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여부·접근권한 재분류, 분류·편철 확정 등을 하여야 한다.</p>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3	<p>기록물 정리시 비공개 사유가 소멸된 기록은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유도하였는가?</p> <p>❖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대상정보)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p>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4	<p>처리과로부터 기록물 인수시 건단위 또는 쪽단위로 공개여부가 구분되어 있는지, 비공개 기록물의 경우 비공개 사유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였는가?</p>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번호	체 크 항 목	결 과
	<p>❖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72조(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①공공기관이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건단위 또는 쪽단위로 공개여부를 구분하고, 비공개기록물의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5	<p>부분공개, 비공개 기록물의 경우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조항이 적절히 표시되어 있는가? (예: 부분공개(6호), 비공개(5호) 등)</p> <p>❖ 기록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기록물 공개여부 구분표시)①영 제27조에 따른 기록물의 공개여부 구분표시는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 중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의 경우에는 해당정보를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로 표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번호 중 해당 번호를 괄호 안에 표시하여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p>	<p>Yes <input type="checkbox"/></p> <p>No <input type="checkbox"/></p>
6	<p>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은 5년 후 주기적으로 재분류 될 수 있도록 재분류 값과 재분류 시점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가?</p> <p>❖ 기록물관리법 제35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②기록물관리기관은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재분류된 연도로부터 매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p>	<p>Yes <input type="checkbox"/></p> <p>No <input type="checkbox"/></p>
7	<p>기록물의 유형별, 생산부서별로 일관성 있는 공개기준이 적용되었는가? 동일한 유형에 대해 형평성 있는 공개 값이 책정되었는가?</p>	<p>Yes <input type="checkbox"/></p> <p>No <input type="checkbox"/></p>
8	<p>공개재분류 의견 조회시 비공개할 경우 비공개 사유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는가?</p> <p>❖ 기록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기록물 공개여부 구분표시)①영 제27조에 따른 기록물의 공개여부 구분표시는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 중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의 경우에는 해당정보를 “부분</p>	<p>Yes <input type="checkbox"/></p> <p>No <input type="checkbox"/></p>

번호	체 크 항 목	결 과
	<p>공개()” 또는 “비공개()”로 표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 호의 번호 중 해당 번호를 괄호 안에 표시하여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p>	
9	<p>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개재분류를 심의할 경우 심의회 운영규정에 공개여부 재분류 심의에 관한 조문을 추가하였는가?</p> <p>❖정보공개법 시행령제11조(정보공개심의회)①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p>Yes <input type="checkbox"/></p> <p>No <input type="checkbox"/></p>
10	<p>공개재분류 결과를 기관의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에 반영하였는가?</p> <p>❖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대상정보)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p>	<p>Yes <input type="checkbox"/></p> <p>No <input type="checkbox"/></p>
11	<p>기록물관리법 시행일('07. 4. 5)이전에 기록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공개기록물을 2009년 6월 30일까지 모두 재분류 하였는가? (부칙 제5조)</p> <p>❖기록물관리법 부칙 제5조(비공개 기록물의 재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기록물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중 비공개로 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2009년 6월 30일까지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p>	<p>Yes <input type="checkbox"/></p> <p>No <input type="checkbox"/></p>

PART

부록

참고자료

■ 관련 법령 및 훈령

1. 공개재분류 관련 기록물관리법령
(2단비교)
2. 국가기록원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참고자료

관련 법령 및 훈령

1. 공개재분류 관련 기록물관리법령(2단비교)

법 률	시 행 령
<p>제18조(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공공기관은 업무수행과정에서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제24조(기록물의 정리) ①법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2월말 까지 전년도에 생산을 완결한 기록물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여부·접근권한 재분류, 분류·편철 확정 등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록물 정리결과는 제20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 및 기록물철 등록정보에 반영하여야 한다.</p>
<p>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①공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공개여부·비밀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④특수기록관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관 비공개 기록물에 대하여는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까지 그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p>	<p>제25조(기록관리기준표)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업무 과정에 기반을 둔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운영하여야 하며,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항목은 ...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의 관리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p>

법 률	시 행 령
<p>있으며, 30년 경과 후에도 업무수행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시기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p> <p>⑤국가정보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관 비공개 기록물에 대하여 생산연도 종료 후 50년까지 그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정보업무 관련 기록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관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27조(공개여부의 구분관리) 기록물은 건단위로 공개여부를 구분하고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 등록정보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p> <p>시행규칙 제18조(기록물 공개여부 구분표시)</p> <p>①영 제27조에 따른 기록물의 공개여부 구분표시는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하여야 한다.</p> <p>②제1항 중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의 경우에는 해당정보를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로 표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번호 중 해</p>

법 률	시 행 령
	<p>당 번호를 괄호 안에 표시하여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p>
<p>제35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p> <p>①공공기관은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 이관하여야 한다.</p> <p>②기록물관리기관은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재분류된 연도로부터 매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p> <p>③비공개 기록물은 생산년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모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관시기가 30년 이상으로 연장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 생산기관으로부터 기록물 비공개기간의 연장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기록물공개심의회 및 위원회의 각 심의를 거쳐 당해 기록물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재분류한 연도부터 매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p>	<p>제72조(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p> <p>①공공기관이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건단위 또는 쪽단위로 공개여부를 구분하고, 비공개 기록물의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②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장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③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비공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공공기관의 장은 연장시기 및 사유 등을 해당 비공개기록물의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30년이 지난 해의 전년도 말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공개여부 의견조회시 해당 공공기관이 비공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에 비공개 사유 및 공개가능 시기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공개 청구에 의하여 생산기관의 의견을 조회하는 때에는 그 생산기관은 7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p>

법 률	시 행 령
<p>⑤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기록물을 생산한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⑤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된 기록물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당 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p>
<p>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조(비공개 기록물의 재분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기록물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중 비공개로 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2009년 6월 30일까지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p>	

2. 국가기록원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규정

국가기록원 훈령 제53호(2008. 12. 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설치하는 기록물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5년주기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및 30년 경과 기록물 공개여부
2. 법 제3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기간의 연장 요청 사항
3.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 성격별 비공개 상한기간
4.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기록물 제한적 열람청구 사항 중 열람결정을 위해 심의가 필요한 사항 및 재심의 요청 사항
5. 영 제68조 제6항 및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기록물 재분류 및 해제된 비밀기록물의 공개여부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사항
7. 기타 기록물 공개·열람과 관련하여 국가기록원장이 요청한 사항

제3조(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심의회는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장, 기록관리부장, 기록정보서비스부장
 2. 기록학, 역사학, 법학, 행정학 관련 전공자로 기록물의 공개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국가기록원장이 위촉한 자
- ③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국가기록원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④위원장 및 위원은 기록물 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개서비스과장으로 한다.

제5조(회의 및 의결 등) ①심의회는 국가기록원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 ②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③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서면심의의결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대상 목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⑤간사는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비공개기록물 제한적 열람 등 공개·열람업무 관련 현황을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예비심사) ①국가기록원장 또는 위원장은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와 관련하여 사전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물공개심의회를 개최하기 전에 예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예비심사는 공개서비스과가 주관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과 관련된 전현직 공무원, 학계 및 관련단체 전문가를 예비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공개서비스과장은 예비심사 검토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는 국가기록원장 및 심의회 위원들에게 심의회 개최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특수 기록물의 생산기관 의견조회) ①공개서비스과장은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공개서비스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재분류 대상 기록물 생산기관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생산기관 의견을 조회 또는 청취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회 결과의 공표)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기로 결정한 기록물은 당해 기록물의 목록을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경비지급)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기록물공개 심의대상 목록

일련번호	기록물철명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기관

[별지 제2호 서식]

예비심사 검토의견서

예비심사 일시 및 장소 :

참 석 자 :

안 건 :

심사내용 :

직 위	위원명	검 토 의 견	서 명

[별지 제3호 서식]

1. 서면심의 의결서

기록물 공개 서면심의 의결서

의 결 일 : _____ 위 원 명 : _____ (인)
 안 건 : _____
 심사내용 : _____

검 토 의 견	의 결 내 용	
	가	부

2. 심의 의결서

기록물 공개 심의 의결서

일 시 : _____
 안 건 : _____
 심의내용 : _____

심사위원	성 명	의결내용		서 명
		가	부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별지 4호 서식]

기록물공개심의회 회의록

작성자 :

일 시			장 소	
참석자	위 원			
	배석자			
회의진행순서				

안 건				
위원명	발	언	요	지
결정사항				

잠자는 기록물에

숨겨
를 달자

기록물 공개재분류 실용매뉴얼 : 기록관 편

발행일 | 2009년 6월

발행처 |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서비스부 공개서비스과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2동 920) 정부대전청사 2동

TEL. 042)481-6665 FAX. 042)487-6535

<http://www.archives.go.kr>

